

연구보고서 99- (제 권)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책임 김 선 기
박 회 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9- (제 권)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Enhancing the Government Financial Assistance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한국지방행정연구원

序 文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경영환경이 무척이나 어려운 형편이다.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과 함께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존립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큼의 자생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부실과 침체의 어려움에서 허덕이고 있는 형편이다. 고비용-저효율로 특징지워지는 우리 경제의 악순환고리가 지금까지도 단절되지 못하고 있어 높은 지가와 임금, 과다한 물류비용, 기술·기능인력난, 대기업과의 무차별적 경쟁,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환경규제의 강화, 대기업도산으로 인한 연쇄부도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의 IMF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상황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자금, 판매, 기술, 경영 등 모든 분야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에서 가장 큰 애로요인은 단연 자금조달 곤란 및 금융부담 가중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외부자금의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자금,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반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애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의 형식성, 담보부족, 절차의 복잡성, 지원한도의 부족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내부적 취약성으로 인해 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고용, 생산, 수출 등에서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산업구조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방중소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의 고용 및 소득창출, 지역의 SOC확충, 지역자원 활용 및 지방재정기반의 강화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

방자치의 발전에도 중요한 실천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과제가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시기적으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현황분석을 토대로 지방중소기업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지원자금의 문제점과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용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중소기업정책을 다루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연구진의 노고와 함께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을 도와준 충청남도 관계공무원의 협조에 감사를 드린다.

1999년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 장 이 달 곤

要 約

지방중소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의 고용 및 소득 창출, 지역의 SOC 확충, 지역자원의 활용 및 지방재정기반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실천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자금조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제로 지방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과 지원자금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용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충남소재 '97년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 기업들이 최근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조업상태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판매부진과 재고누적」 때문이며 IMF 한파가 충남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응답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지만 정리해고를 고려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답 기업들은 향후 매출전망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둘째, 정부의 자금지원시책에 대하여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잡한 자금지원절차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조사결과 응답 기업들의 약 30% 수준이 매년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혜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의 편중현상이 엿보인다.

셋째, 응답 기업들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담보위주의 대출방식, 복잡한 지원절차, 부족한 지원자금 규모, 불합리한 평가기준 등을 지적하였다. 은행대출 시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금융지원정책으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만기대출금 상환을 연장해 주는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자금지원효과의 영향요인분석 결과 중소기업 보다는 중기업에,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그리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 자

금을 지원하여야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생산 증가, 부가가치 증가 등 생산제고효과는 2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인력 절감, 불량률 감소 등 경영개선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결과와 실태분석을 토대로 현행 지방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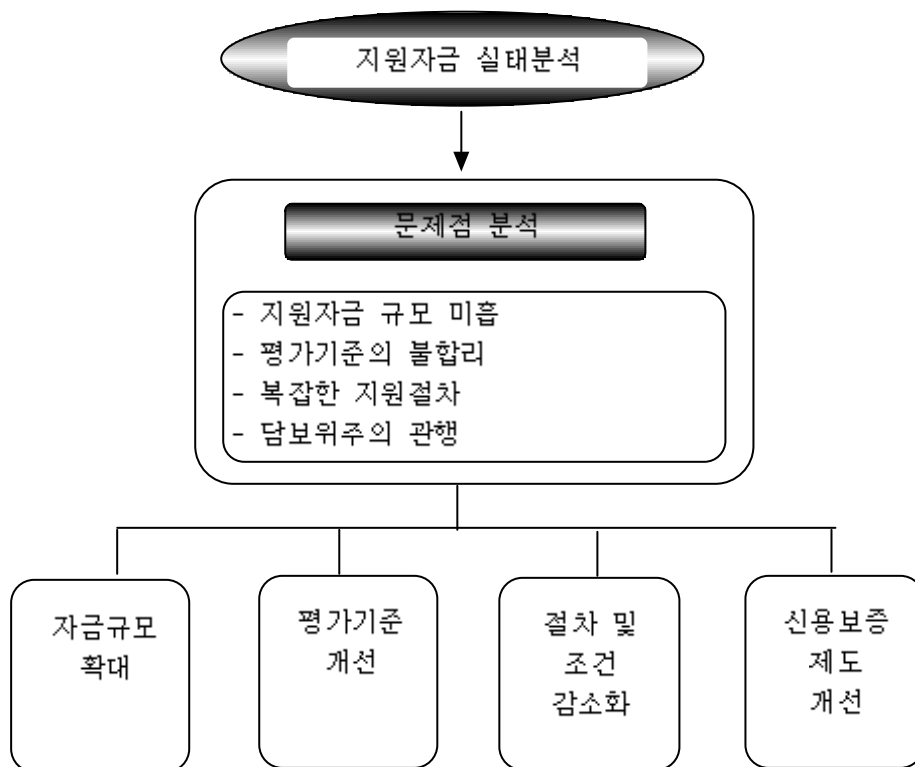
첫째, 중소기업 지원자금 규모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넷째, 담보대출 위주의 자금지원방식으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상의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 전략을 자금규모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능 강화, 자금배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 절차의 간소화, 융자보증제도의 개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요청되는 바, 중앙자금의 지방이양 촉진, 지역자금의 동원을 위한 지역활성화 공동투자제도(가칭)의 도입 등이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자금배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자의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세분화된 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자금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재무구조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보다 강화하여 지원자금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전반적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담보위주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보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융자보증제도의 활성화나 기술보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目 次>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제 2 장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이론적 검토	5
제1절 중소기업 지원의 준거와 목적	5
1. 중소기업 지원의 준거	5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목적	9
제2절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의의와 유형	14
1.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의의	14
2.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유형	16
제3절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	19
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9
2. 기업운영 개선 효과	20
3. 선행연구 검토	21
제4절 WTO·금융자유화와 중소기업 지원자금	22
1. WTO와 중소기업 지원자금	23
2.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중소기업자금시장	25
제 3 장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실태	27
제1절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변천	27
1. 중소기업정책의 기반구축(1962-1971)	27
2.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중소기업 구조개선(1972-1991)	28

3. 중소기업정책의 다양화 및 활성화(1982-1990)	30
4. 1990년대	31
제2절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유형 및 조건	32
1. 기업자금의 종류 및 조달방법	32
2.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종류와 개요	34
3.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제도	46
제3절 중소기업 지원자금 재정규모 및 운용현황	48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 규모	49
2.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운용현황(총괄)	50
3. 사업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운용현황	52
제4절 지방중소기업 자금지원의 문제점	58
1. 자금지원제도의 복잡·세분화	59
2. 지원재원의 부족	59
3. 자금지원의 형평성 문제	60
4. 자금조달의 높은 은행의존도	61
5. 과도한 담보대출 의존	62
제 4 장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분석	64
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64
1. 분석의 틀	64
2. 자료수집	65
3. 분석방법	66
제2절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전망	67
1. 조사대상 기업의 일반적 특성	67
2. 경영여건	69
3. 전망	71
제3절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평가	72
1. 만족도	72

2. 자금지원 혜택	74
3. 지원자금의 예로요인 및 방향	76
제4절 자금지원의 효과분석	80
1. 정책자금의 일반적 효과	80
2. 부문별 효과	82
제5절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84
제 5 장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용개선방안	85
제1절 기본방향	8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기능 강화	87
1.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자금의 지방이양 촉진	87
2. 지역활성화 공동투자제도(가칭)의 도입	90
제3절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배분방식 개선방안	91
1. 지원자금 배분방식의 기준설정	91
2. 기존 기업체평가방식의 문제점 검토	93
3. 개선방안에 따른 수정점검표	101
4. 개선방안의 한계점	103
제4절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용체제의 개선	105
1. 중소기업 자금지원체제의 정비	105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확대 및 우대조치 강화	106
3. 자금지원절차 및 구비서류의 간소화	107
4.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 관한 정보체계 확립	109
제5절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활성화	109
1. 신용심사기준의 표준화 및 심사기법의 전문화	109
2. 신용대출관련 면책기준의 강화	109
3. 주거래은행 기능의 강화	110
4.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의 확대	111

5.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담보융자 도입	111
6. 지역단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확대	112
<참 고 문 헌>	114
<설문지>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실태조사	117

〈表目次〉

<표 2-1> 중소기업의 연도별 비중 변화	11
<표 2-2>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체 비중	12
<표 2-3> 중소기업 지원목적별 프로그램 예시	15
<표 2-4>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유형(Ⅱ)	17
<표 2-5> 우리 나라의 재원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21
<표 2-6>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사례	23
<표 3-1> 중소기업 관련법률 개편체계	36
<표 3-2> 재정자금의 종류	40
<표 3-3> 지역신용보증조합의 현황	47
<표 3-4>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차이	49
<표 3-5>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현황	50
<표 3-6>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사업내용	51
<표 3-7> 정부 재정 중 중소기업지원 규모	52
<표 3-8>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 규모	52
<표 3-9> 자치단체별 중소기업지원규모	53
<표 3-10>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운용현황(총괄)	54
<표 3-11>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대출운용현황	55
<표 3-12> 구조개선자금의 사업별 현황	56
<표 3-13>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운용현황	57
<표 3-14>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운용현황	59
<표 3-15> '98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배정	59
<표 3-16>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현황	61
<표 3-17>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정부대 지방 연계비율(시설개체사업, 1997년)	64
<표 3-18> 중소기업 차입금의 조달처 비율	65
<표 3-19> 신용보증기관의 실태	67
<표 4-1> 변수의 정의	69

<표 4-2> 표본의 구성	70
<표 4-3> 응답기업의 형태	71
<표 4-4> 응답 기업의 업종	71
<표 4-5> 응답 기업의 일반적 특성	72
<표 4-6> 응답 기업의 특허권 보유 현황	73
<표 4-7> 정상 조업이 어려운 이유	73
<표 4-8> 자금사정이 악화된 이유	74
<표 4-9> 자금지원시책에 대한 만족도	76
<표 4-10> 지원자금 규모에 대한 만족도	77
<표 4-11> 대출절차와 비용에 대한 만족도	77
<표 4-12> 지원자금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	78
<표 4-13> 정책자금의 지원회수	78
<표 4-14> 업종별/규모별 지원회수	79
<표 4-15> 자금배정의 탈락경험	80
<표 4-16> 탈락시 자금조달방법	80
<표 4-17> 정책자금 지원상의 문제점	81
<표 4-18> 은행 대출상의 문제점	82
<표 4-19> 시급한 금융지원정책	82
<표 4-20> 중점지원이 필요한 분야	83
<표 4-21>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	84
<표 4-22>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85
<표 4-23>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생산제고효과	86
<표 4-24>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경영개선효과	87
<표 5-1> 중소기업 지원자금 전달기관의 선정기준	92
<표 5-2> 충청남도 구조조정자금 신청기업체 종합평가표(기준)	97
<표 5-4> 단기지급능력분석표	101
<표 5-5> 기술성 평가표(기준)	102
<표 5-6> 경영능력 평가표	102
<표 5-7> 사업전망 평가기준	103

<표 5-8> 국민경제적 효과 평가기준	104
<표 5-9> 기업 재무상태평가 기준표(수정)	106
<표 5-10> 기업 경영능력 평가기준표(수정)	106
<표 5-11> 기업 사업전망 평가기준표(수정)	107
<표 5-12> 기술담보제도의 단계별 도입방안	116

<그림目次>

<그림 2-1> 중소기업 지원유형(I)	16
<그림 2-2>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역활성화 효과	24
<그림 4-1> 조사분석의 틀	68
<그림 4-2> 인력 및 임금조정 계획업체의 내용	75
<그림 4-3> 응답 기업의 구조조정 내용	75
<그림 4-4>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종류	79
<그림 5-1> 지원자금 운용개선의 기본방향	90
<그림 5-2> 지방중소기업 재정지원의 틀	91
<그림 5-3> 지역활성화공동투자제도의 운영체계	95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무척이나 어렵다. 외적으로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적 조류와 함께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가혹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내적으로도 중소기업이 맞이하고 있는 환경은 전례없이 어려워 수많은 중소기업이 가(假)부도상태에 빠지는 등 중소기업부문의 와해를 우려해야만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고비용-저효율로 특징지워지는 악순환이 아직도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높은 임금과 지가, 과다한 물류비용, 기능·기술인력의 구인난, 대기업의 업종다변화로 인한 무차별적 경쟁심화,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환경규제의 강화, 대기업도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등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환경은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태이다. 게다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관리체제란 전대미문의 경제대란으로 인해 자금, 판매, 기술, 경영 등 모든 측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심각한 금융경색과 경기침체의 파고를 헤쳐가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여러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이 느끼는 경영애로요인으로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판매부진, 임금상승, 자금부족 등을 꼽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애로요인은 자금조달 곤란 및 금융부담 가중이다. 중소기업은 주식, 회사채 등 외부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자금,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운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애로사항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국가적 과제라고 모두가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육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모두들 인정하고 있다. 국가마다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지만 자유시장경제의 초석으로서의 중요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은 자유로운 창업을 통한 경제적 활력소 (economic dynamics)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대한 저가, 고품질, 신기술의 부품공급자로서 대기업이 내부적 유연성과 기술적 진보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전통기술 또는 중간기술(medium technology)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¹⁾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비단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고용창출, 소비생활의 향상, 혁신의 원천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대부분의 국가가 중소기업의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벤처기업의 활약이 미국경제의 경쟁력을 다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나라가 중소기업의 육성에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²⁾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IMF이후 ‘대기업은 안전하고 강하다’는 대마블사의 신화가 붕괴되면서 오히려 경제혼란의 와중에도 자기기업종에서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사례가 속속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상품목에서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 우수한 기술력, 틈새시장 공략 등으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³⁾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중진국적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소기업의 침체는 최근 불황기에 더욱 두드러져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9가지 법률에 근거해 수많은 지원수단을 마련해 놓았으며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의 형식성, 담보부족, 지원한도의 부족, 절차의 복잡성 등의 이유와 함께 중소기업의 내부적 취약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입지여건이 열세인 지방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의 혜택에서 더욱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우리경제의 왜곡된 구조를 건전화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1) M. Giaoutzi, P. Nijkamp and D. J. Storey,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 Routledge, 1988, p. 4.

2) 중소벤처기업의 활약상은 선진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예컨대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인 야후(Yahoo)의 경우 세계 최대 기업인 GM에 비해 매출액('98)은 1/800, 종업원수는 1/1,500에 불과 하지만 시장가치는 절반을 넘는 33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예컨대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흥진크라운의 헬멧은 미국 오토바이 운전자의 10명 중 4명이 착용하고 있으며 손톱깎이(대성금속), 스키장갑(시즈), 텐트(진웅), 모자(영안모자) 등의 품목에서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의 20~40%를 점유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필수적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그 중에서도 지방중소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의 고용 및 소득 창출, 지역의 SOC 확충, 지역자원의 활용 및 지방재정기반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실천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자금조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의의와 효과 등에 관한 이론적 이해와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제로 지방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과 지원자금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용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이 연구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 및 연구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한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도권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⁴⁾ 특히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해당지역의 지역경제력과 지방재정력이 열악할 뿐 아니라 기업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과 입지적 열세까지 겹쳐 자금지원면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이다.

둘째,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는 크게 ①재정자금 대출제도, ②중소기업 전담은행제도, ③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 우대제도, ④중소기업 신용보완제도, ⑤중소기업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제2조 제6항에서는 지방중소기업을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가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반개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지방중소기업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창업지원제도, ⑥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운용하는 재정자금을 주로 다루며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가 정책목표를 갖고 지방중소기업을 위해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셋째, 자금지원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원자금의 운용과 직접 관련된 자치단체의 역할, 자금배분, 지원방식 및 신용보증 등의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연구의 대부분을 크게 문헌연구와 조사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먼저 문헌연구로는 국내외 중소기업제도 관련자료, 법령집, 통계자료, 인터넷자료 등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자금에 관한 이론과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연구로서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운용실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충남지역의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별도의 설문조사표에 의거하여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의 분석 내용을 정책대안에 반영하였다.⁵⁾

5) 조사표의 내용 및 조사설계는 부록과 제4장 제1절을 참조.

제 2 장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이론적 검토

제 1 절 중소기업 지원의 준거와 목적

1. 중소기업 지원의 준거

가. 경제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정부가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전체사업체 중 중소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년도에 99.1%에 이르고 있다. 또한 종업원 수와 생산액, 부가가치는 각각 69.3%, 46.3%, 46.5%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보다 많거나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소기업이 우리 나라의 고용, 생산 등 주요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년 39.9%에서 97년 41.8%로 증가(중소기업청, 1999)하고 있어,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2-1> 중소기업체의 연도별 비중 변화

구	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사업체수(개)	전체	88,864	91,372	96,202	97,144	92,138
	중소기업	87,913 (98.9)	90,447 (99.0)	95,285 (99.0)	96,241 (99.1)	91,324 (99.1)
종업원수 (천명)	전체	2,885	2,930	2,952	2,898	2,698
	중소기업	1,987 (68.9)	2,026 (69.1)	2,034 (68.9)	2,006 (69.2)	1,870 (69.3)
생산액 (10억 원)	전체	255,926	299,246	364,821	401,953	434,895
	중소기업	122,361 (47.8)	143,421 (47.9)	169,785 (46.5)	187,926 (46.8)	201,464 (46.3)
부가가치 (10억 원)	전체	108,522	129,611	159,448	174,215	181,085
	중소기업	54,549 (50.3)	63,768 (49.2)	73,808 (46.3)	82,281 (47.2)	84,148 (46.5)

주 : 5 - 300인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 통계(1999):37

이와 같은 현상은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일본, 대만,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체 대상기준은 어느 정도 상이하지만, 각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2-2> 참조). 이러한 까닭에 우리 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⁶⁾.

<표 2-2>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체 비중

구분	한국(96년)	일본(96년)	대만(96년)	미국(95년)
사업체수 (개,%)	96,241 (99.1)	365,946 (99.0)	150,806 (98.0)	341,830 (87.6)
고용(천명)	2,006 (69.2)	7,226 (71.9)	1,979 (81.7)	7,164 (38.5)
출하액	185873(10억원) (46.7)	159523(10억엔) (51.0)	232,761(백만원) (34.4)	949,077(백만불) (27.8)
통계기준	종업원 5-299인	종업원 4-299인	자본금 6,000만 원미만	종업원 1-499인

주 : ()는 전체에서의 중소기업체 비중임(%).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 통계(1999): 45

이밖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합리적 준거들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경제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비교적 공통적인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 제조업(철강, 조선, 섬유 등)에서의 일자리 감소이다. 즉,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였던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사양산업화 되면서 불가피하게 인력 감축 등 구조개편을 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업종다양화의 필요성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의 관심이다. 즉, 지역의 발전격차가 심화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가의 부문별 사업정책만으로는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내생적 발전 잠재력을 이끌어낼 새로운 정책수단들이 강구되기에 이르렀으며 지방중소기업은 낙후지역 발전의 핵심적 정책대상이 된 것이다. 우리 나라는 과거 성장제일주의의 경제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경제력 집중과 소득분배의 불공평, 그로 인한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심화를 겪어오고

6) 각국의 중소기업체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성광원(중소기업론, 1996)을 참조.

있다. 이러한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며, 사회의 저변을 형성하는 광범위한 중산층의 육성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의 육성은 이를 해결하는 좋은 정책수단이다.

셋째, 지방고용 창도력(local employment initiatives)에 대한 관심이다. 지방의 실업문제가 국가통합을 저해할 수준에 이르게 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주도적인 고용창출노력에 기대를 걸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개발기관을 위해 지원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들 지원활동의 주요 프로그램들은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있다.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은 지역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고용창출, 지방자원의 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소득창출 등 경제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사회·문화생활을 돕고 참여하는 협력자로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대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지방화시대의 정착과 관련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의 역할이 증대된 점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의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넷째, 선진국이나 경쟁 대상국으로부터의 벤치마킹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고용 창출, 경제혁신, 지역재생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 왔고 이러한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모형이 새로운 경제발전모형으로 각광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나. 시장 및 기술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역할변화

이상의 일반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요인 외에 시장 및 기술변화는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계속 제고해 나갈 필요성을 응변하고 있다. 특히 기술변화와 이로 인한 제5의 물결⁷⁾은 규모의 경제를 낳는 대규모 생산단위의 이점에 대한 경제이론을 재고하기에 이르렀다.

1) 기술변화와 중소기업

먼저 기술면의 변화를 살펴보면 생산주기의 감소, 컴퓨터산업의 발전과 이로 인한 생산공정의 컴퓨터화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생산주기의 감소로 빠르게 혁신하고 적응하기 위해 관리구조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7) 제5의 물결은 컴퓨터화, 커뮤니케이션기술의 발전, 사업거래의 국제화, 적시생산 및 재고최소화를 위한 노력, 상품선적의 중요성 증가 등으로 항공, 국제시장, 시간에 기초한 경쟁력이 요구되는 추세를 의미한다.

둘째, 혁신자 또는 역동의 원천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컴퓨터산업에서 드러났다는 점이다.

셋째, 컴퓨터에 의한 디자인 및 생산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다양한 생산품을 더 값싸게 디자인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비용에 의한 산업경쟁력으로 특징지어 지는 반면 1980년대 후반이후 스피디하고 유연한 전달이 핵심적 경쟁요인으로 등장하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생산방식을 취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대기업들도 기술적 복잡성의 증대, 시장변화의 급변에 대응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서 벗어나 많은 활동을 소규모 외부 공급자들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업간 분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문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분업관계를 형성하여 생산공정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대기업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자본투하를 절약하게 하며,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 상호간의 분업확대는 기업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전문화를 진전시켜 산업저변의 생산력 기반을 강화시킨다.

2) 시장변화와 중소기업

한편 시장적 측면에서는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적시생산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세계적으로 시장기호가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되고 기술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 및 기술혁신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구조의 변화와 기술혁신 등의 환경변화는 자본집약적이고 관료적인 대기업보다 기술 집약적이고 창의적인 중소기업에게 더욱 유리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요의 변화로 인해 틈새시장(niche market)이 늘어난 점도 중소기업의 존립의의와 사업분야를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시장수요에의 적시적 대응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고 기업의 세계(global)경영이 보편화됨에 따라 국제분업체제가 확대되고 있다. 즉, 기업은 생존전략의 하나로써 노동·기술·자원·경영환경 등 생산요소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최적지로 생산활동의 거점을 이전하는 등 국경을 넘은 자본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국경이 없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첨병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목적

가. 지원목적

정부의 시장개입은 기능적 관점에서 볼 때, 시장실패를 치유하고 그에 따라 목표 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핵심 경영자원인 자금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중소기업과 관련한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정책의 목적은 최대의 융통성을 기업에 부여하는 사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선호(risk taking)가 규제로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Dyson, 1990). 따라서 유럽 국가들의 중소기업정책은 주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감소와 입법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목적을 ① 중소기업의 창출 및 개발을 위한 환경의 개선, ② 중소기업의 융통성과 자본 제공에 대한 기여로 구분할 경우 각 목적에 부합되는 관련프로젝트를 예시하면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3> 중소기업 지원목적별 프로그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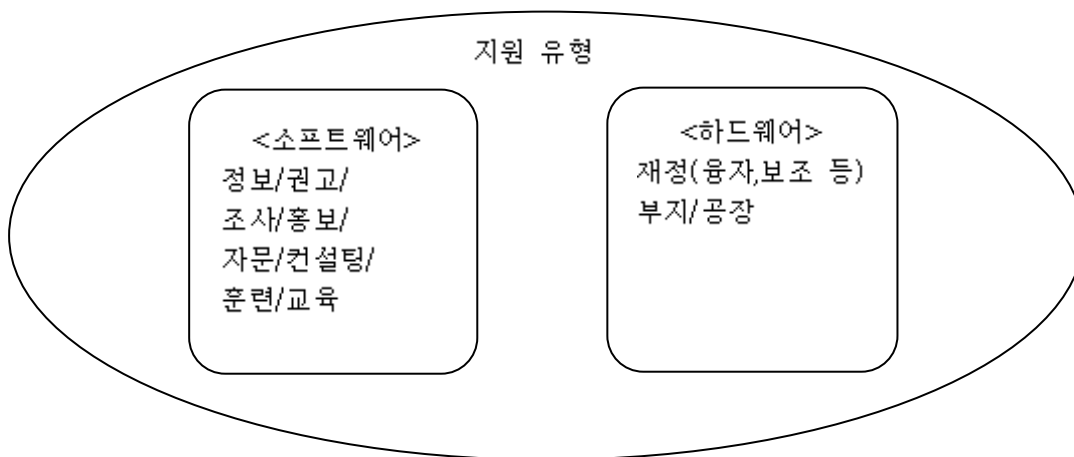
지원목적	프로그램(예시)
중소기업의 창출 및 개발을 위한 환경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정신의 고취 (훈련프로그램 관련) - 행정환경의 개선 (규제완화, 영향평가절차의 도입) - 시장통합의 감시 (무역장벽 해소) - 상법 개정(중소기업에 특별대우) - 독과점금지법 개정(사업협력 촉진) - 조세환경 개선(이중과세 일소, 자체 자금조달능력 및 자금흐름 개선, 조세감면) - 사회환경 개선(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사회 입법 자제)
중소기업의 융통성과 자본 제공에 대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기술에의 적응을 위한 훈련 - 시장, 품목, 표준, 자원, 기술에 대한 정보의 이용가능성 증대 - 수출촉진 프로그램 - 창업 및 혁신을 조장(대학과 중소기업간의 연계, 기술이전 촉진, 이업종 교류) - 기업과 지역간의 협력(대기업과의 하청계약 및 파트너십 촉진, 저발전지역내 중소기업간 협력) - 자본의 제공(민간은행, 낙후지역 지원, 융자 및 융자보증 등)

자료 : Dyson(1990)

나. 지원목적별 유형

중소기업 지원의 유형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바, 먼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소프트웨어적 지원으로는 정보, 권고, 조사연구, 홍보, 자문, 컨설팅, 훈련, 교육 등을 들 수 있고 하드웨어적 지원으로는 자원조달, 부지 및 공장 등과 관련된 지원을 포함한다 (Haskins & Gibb, 1987).

<그림 2-1> 중소기업 지원유형(1)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유형을 수요나 고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① 창업 지원, ② 수출기업 지원, ③ 기업혁신 지원, ④ 신상품 개발 지원, ⑤ 위기에 처한 기업 지원, ⑥ 사업가정신 교육지원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그 일례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유형을 수요 분야별/ 지원 형태별로 정리하면 <표 2-4>와 같은데 창업 및 기업유치분야에서는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경영 및 기술지도, 도로등 하부구조 제공 등이 주요 지원 내용이다. 운영 및 마케팅분야에서는 원자재 지원, 상품 구매, 수출 지원, 홍보 등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의 내용들이다. 그리고 인력분야에서는 보조금이나 직업훈련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지 및 시설관련분야에서는 토지 제공, 자동화 자금 지원, 하부구조 제공 등이 행해지고 있

다. 기술관련분야에서는 전문가 제공, 연구개발활동 지원, 경제정보 제공 등이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이다. 노정분야에서는 노사관계에 재량적으로 관여하거나 노사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밖에 정부는 친선활동이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동기부여를 하기도 한다.

<표 2-4>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유형(Ⅱ)

분야	직접지원	간접지원
창업 및 기업유치분야	-자금지원 -경영 및 기술지도 -조세감면	-하부구조 제공
운영 및 마케팅분야	-원자재 지원 -우선구매 -수출지원	-일반서비스 제공 -상품 홍보
인력분야	-보조금	-직업훈련 지원
토지 및 시설관계분야	-토지제공 -자동화 자금 지원	-하부구조 제공
기술관련분야	-전문가지원 -R&D 지원	-경제통계 -경제모니터링
노정분야	-노사관계 관여	-노사위원회 참여
동기부여 등 기타분야	-친선 -인센티브제공	-소득세 감면 -인큐베이터시설 운영

제2절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의의와 유형

1.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의의

기업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필수적이다. 즉, 자금은 모든 기업의 핵심적 자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자금수급의 불균형, 금리의 조절기능의 제약,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참여자의 위험회피성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한 금융시장은 대기업에 비해 시장 왜곡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정보가 불명확하며, 기장(記帳)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신용을 평가한다는 것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금융기관이 상당히 위험회피적이거나 단기적 이윤획득만을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매우 어려우며, 조달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행태는 일면 합리적인 것이다. 금융시장 수요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관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공급자가 공급을 제한하거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그에 합당한 추가적인 부대조건(담보, 높은 금리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유로 개별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신용평가 노력 자체를 기피한다는 점에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다(제43회 정책토론회, 1998).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금융서비스의 공급 자체를 기피하거나 과중한 담보를 요구하여 중소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점

둘째, 신용보증 요구의 관행화로 신용위험을 타 금융기관간에 전가시키고 중소기

8) 이러한 점 때문에 중소기업은 간접금융외에 직접금융도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금융보다는 주로 간접금융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직접금융보다는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업에게 금융거래비용을 과중하게 부담시킨다는 점

셋째, 우월적인 협상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과다한 금리를 요구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정보처리 능력의 부족이나 위험회피 성향, 단기적 시계 등 시장실패요인이 금융시장에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시장왜곡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중소기업관련 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육성이라는 목표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 수단은 정책금융이다. 정책금융이란 상업금융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정부가 자금의 유용성(availability) 또는 이자율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자금의 부문간 배분에 관여하거나 차입자의 자본비용을 증감시키는 금융운용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은 점차 금융시장의 자율화, 개방화 등으로 인해 합리적 정책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WTO 등 세계 경제 흐름과도 맞지 않는 부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점차 각종 기금 등 재정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근의 각종 기금의 설치는 이와 관련이 크다고 보여진다.

한편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분야는 사회적으로 큰 외부성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환경개선, 정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화와 관련한 자금지원은 지방중소기업의 첨단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의 확산을 통해 지방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외부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폭넓은 전후방효과를 일으킴으로써 누적적 연쇄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입지 지원, 협동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등 정부의 자금지원은 분야별 목적에 따라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정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산업구조정책 또는 산업조직정책상 목적을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자금지원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술개발, 지역균형개발외에도 환경보호, 창업지원, 고용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적이 있다.

요컨대, 정부는 중소기업관련 금융시장의 여러 시장실패적 요인을 보완하고, 산업구조정책 및 조직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유형

가.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책목적 또는 기능에 따른 분류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9개 분야로 분류된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2). 즉, 벤처 및 창업지원, 경영안정지원, 설비투자 및 입지지원, 기술개발 및 신기술사업화지원, 정보화 및 디자인지원, 환경개선지원, 고용 및 근로자복지지원, 수출지원, 소기업 지원 등이 그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금융조달제도와 관련한 분류이다. 이 경우 자금배분상의 우대제도, 담보력보완제도, 창업지원제도, 직접금융조달 지원제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금배분상의 우대제도에는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등 법규에 의한 자금의 우선배정⁹⁾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¹⁰⁾ 등이 있다. 담보력보완제도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담보력 보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창업지원제도에는 창업자에 대한 직접적 자금지원(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지방자치단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 등이 지원)과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있다. 또한 직접금융조달 지원제도로써 기업공개, KOSDAQ시장, 회사채발행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재원에 따른 분류이다. 재원은 크게 재정자금¹¹⁾과 금융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자금은 국민의 조세 또는 준조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며, 금융자금은 각종 금융기관(창업투자회사 포함)을 통해 취급되고 있다. 1999년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재원별로 분류하면 <표 2-5>와 같다.

한편, 재정자금은 그 관리·감독 담당부처에 따라 다양한데 각종 기금이나 자금을 기반으로 조성되지만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아 감독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

9)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통한 간접 지원 등

10) 중소기업전담금융기관인 기업·국민은행의 운영, 산업은행등 개발기관 및 각종 공공기금을 통한 지원 등

11) 특별법에 의거 조성된 각종 기금과 별도 조성된 각종 재정자금

<표 2-5> 우리 나라의 재원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구분	지원자금
재정자금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정보화촉진기금, 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자금, 어음보험기금, 소프트웨어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인어음,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입지 및 협동화사업자금, 산업기반기금, 지압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술개발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자금,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및 특허·실용신안 외국출원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환경개선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자금,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근로복지시설자금, 직장보육시설설치 무상자금, 직장보육시설설치 융자금, 해외시장개척기금, 남북협력기금, IBRD자금 및 한은보유외환활용한 외상수입자금, 엔차관자금 내국수입유산스신용장 개설 및 인수, 수출자금 및 수입자금, 자본재수출 중소기업대출, 수입신용장 개설보증
금융자금	벤처·우량기업 자금대출, 뉴스타트 대출, 창업자금 대출, 창업투자 및 융자, 신기술개발자금, 긴근경영안정자금, 대기업납품중소기업대출, 지역특화산업영위 기업대출, 장기운전자금대출, 자가공장마련 부금대출, 내공장마련 부금대출, 각종 시설설치 자금대출, 기계할부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 우수기술보유업체에 대한 특별자금 대출, 특허권담보부 무보증신용대출, 기술개발자금 대출, 기술개발 및 시범기업 자금대출, 기술력담보대출, 공해방지시설자금, 녹색환경대출, 공해방지시설자금, 환경친화사업체 선정 및 자금대출, 무역금융, 자본재수입지원, 소기업자 사업어음할인, 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 소규모사업자사업장임차지급

이상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기능별, 금융조달제도별, 재원별 기준으로 분류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종류는 매우 세분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중복되어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재정자금은 국민의 조세, 준조세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아직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회사 설립근거를 제공한 1958년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를 시작으로, 자본에 대한 이득세율 완화로 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 시킨 소득법(Revenue Act, 1978), 벤처자본에 대한 여러 제한을 철폐한 소기업투자법(1980),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킨 경제회복조세법(Economy Recovery Tax Act, 1981)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령을 정비해 왔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담당부서로 자금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는 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장기융자를 담당하는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지원, 채무보증 등이 그것이다. 한편 주정부는 실제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연방정부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주정부의 금융지원제도는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 메사추세츠주의 경우 주정부가 설립한 메사추세츠기술개발공사(MTDC)는 중소기업의 창업단계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메사추세츠주에서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제개발저축기금(Thrift Institutions Fund for Economic Development)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1995년 시행된 '중소기업 창조활동 촉진법'에 의해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 법은 10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입법으로 사업 개시 5년 미만의 제조업, 인쇄업, S/W업, 정보처리서비스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의 투자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환제도를 신설했다. 중앙에서 운용하는 산업진흥기금은 중소기업의 R&D 활동이나 벤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개발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에서도 융자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근대화자금특별회계나 중소기업진흥자금특별회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융자나 벤처자금의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벤처자본 투자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유럽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벤처기업이나 신규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투자기금(EIF) 프로그램은 1994년 설립되어 1996년 중소기업에 자본투자를 시작하였고 중소기업에 투자한 금융기관에 대출보증을 서 주기도 한다. 그러나 유럽의 각국들은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에서 직접금융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유도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자본

투자회사의 설치, 대출보증 프로그램, 주식보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독일 등과 같이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온 국가에서는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6>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사례

국가별	자금의 종류	운용주체	용도
미국	중소기업 지원자금 창업및벤처자본지원자금 경제개발저축기금	중소기업청 주정부 금융기관	-중소기업투자회사 지원 -중소기업 창업단계에 필요한 모험자본 지원 -중소기업 자금지원(메사추세츠주)
일본	산업진흥기금 중소기업근대화자금 중소기업진흥자금 벤처자본 투자자금	국가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 금융기관	-R&D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에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융자 -벤처기업과 신분야 진출 중소기업 투자
유럽	투자기금(EIF) 창업및벤처자본지원자금	유럽연합 독일	-중소기업에 자본투자, 대출보증 -장기융자로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제 3 절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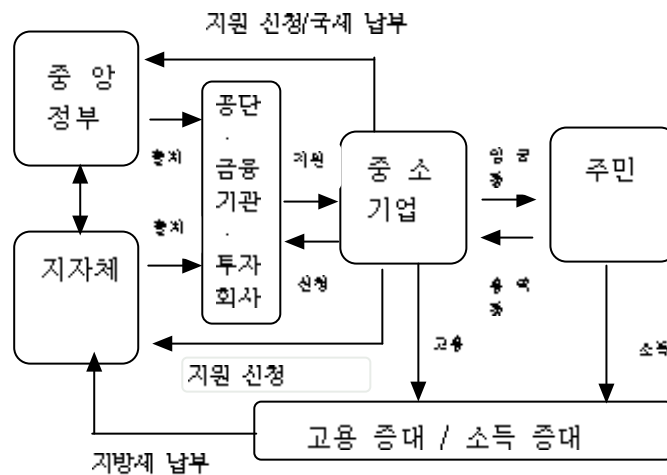
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융자, 대출보증, 조세감면 등 정부의 지원정책은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개선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생산성과 주민소득의 증대를 가져오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지역간 상호교류의 증대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정주기반을 확대시킨다. 이로 인해 생산활동에 총당되는 자금과 사업결과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지역내에서 순환되고, 이것은 지역내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다시 지역내의 경제적 축적을 증대시키게 된다.

중소기업에 의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다시 승수과정을 거쳐 지역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국세와 지방세의 증대로 이어지는 순환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3>과 같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역경제활성화 효

과란 정부의 직·간접적 재정지원에 의해 창업, 사업확대 및 개선, 유치된 기업들이 발생시키는 소득 및 고용증대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받은 기업을 매개로 발생하게 되며,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시점과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게 된다.

<그림 2-2>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역활성화 효과



2. 기업운영 개선 효과

중소기업 지원자금 특히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은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컴퓨터화를 통해 생산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품질향상을 이루는 데 기여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매출, 수출,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성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생산과정의 자동화, 합리화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¹²⁾.

한편, 경영안정자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은 자동화나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보다는 생산 및 경영면에서의 개선효과는 낮지만 중소기업의 자금 유

12) 이에 대해 “기술개발정책이 기업복지를 위해 노동자복지를 희생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Ettlinger, 1997:436).

동성을 강화시키고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생존률¹³⁾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Joregenson, 1963).

3. 선행연구 검토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실증적 연구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직접지출이나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아직 이러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며 주로 규범적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외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Martin Feldstein의 연구결과에서는 정부가 재화를 공급하는데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조세 지원이 직접지출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Patrick A. Driessen은 정부가 제공할 때와 민간이 제공할 때의 상대적 비용을 數理的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Christopher Howard와 Mary William(1995)은 도구적 접근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 조세지원의 효과를 반증하였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반적 효과(Bates, 1995)나 중소기업 용자보증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Harrison & Mason, 1990) 등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발견된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직접적 효과에 대한 일부 연구들이 발견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구조개선사업지원에 따른 성과분석(1997)에서는 1995년 중 중소기업 구조개선(자동화) 자금을 지원받은 1,7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분석대상기업은 496개 업체)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의 90%이상이 자금지원과 구입한 자동화설비에 만족하고 있으며, 생산증대 효과는 95년 23.2%로 중소기업 생산증가율 9.6%를 능가해 중소기업의 생산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기업의 경영개선 효과는 인력절감(평균 1개업체당 4명) 및 불량감소 효과(투자전 불량률 3.7%에서 투자후 불량률 1.7%)를 합하여 연간 원가절감금액이 약 2,900억 원에서 3,3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자동화사업 성과분석(1997)에서는 94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자동

13) T. Bates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의 특정성이 없으며 지원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지원받은 기업의 생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Bates, 1995).

화 자금을 지원받은 2,096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는데(분석대상업체는 437개 업체) 수혜업체의 90%이상이 만족하고 있으며, 자동화 투자금액의 60%가 본 자동화 자금으로 충당되었음을 볼 때 자동화 투자에 유용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고 분석했다. 지원효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생산증대 효과가 22.7%에 달해 전체 중소기업 생산증가율(94년 12.3%)을 상회하고 있어 자동화 투자업체가 중소기업 생산증가율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개별 개선 효과 면에서 인력절감(평균 1개 업체당 5명)과 불량개선효과(투자전 불량률 4.9%에서 투자후 불량률 2.2%)로 연간 원가절감금액이 2,686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는 기업의 자금수요를 전망한 후, 결론적으로 향후 3조 5천억원 이상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산업연구원(1992)은 중소기업지원시책에 관한 기업 설문조사(1990)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정책자금의 매출·고용·수출신장효과에 대한 기업응답은 대체로 효과적임이 각각 70.5%, 65.2%, 61.2%로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4 절 WTO·금융자유화와 중소기업 지원자금

최근의 세계경제는 WTO체제의 출범과 지역경제의 통합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는 정책은 자칫 통상마찰로 비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규범화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따른 국제금융의 자유화로 인해 국내 금융산업 역시 금융자유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대표적인 국제규범인 WTO체제의 기업자금지원관련 규정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국내적으로는 금융자유화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칠 영향을 알아본다.

1. WTO와 중소기업 지원자금

(1) WTO의 출범과 의의

WTO체제는 기존 GATT체제의 협약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간 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1995년 1월 출범했다. 즉, 1994년 4월 12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통상각료회의에서 최종의정서를 정식채택하고 각국이 서명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공식확정되었고, 최종적인 국가별 이행계획서(최종양허표)를 1994년 말을 시한으로 제출함으로써 1995년 1월부터 새 국제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이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 내용은 국제기구로서 실무적 하위기구를 두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다자간 무역협정, 제도에 관한 협정, 복수국가간 무역협정 등이다.

이러한 WTO체제가 갖는 의미는 국제무역질서가 기존의 협정형태에서 기구형태로 강화되고 각국의 각종 산업 및 무역정책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게 됨으로써 약한 경쟁력을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으로 보완하는데 명확한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WTO는 경쟁차원을 세계로 확대해서 다자간 자유무역을 통한 공동의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제도나 관행을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요컨대 보호무역장벽을 낮추고 공평한 국제규범을 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나라간의 경제적 국경이 없는 지구촌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국내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행위를 지향하는 경제주체만이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하에서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정부와 기업의 구분이 없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경우에 자생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업지원 정책중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특혜성, 특정성을 갖고 있는 정책은 더 이상 집행될 수 없으며, 약간의 의심만으로도 다른 국가의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은 자신의 경쟁력을 자생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

특히, WTO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에 상당한 제약요인을 부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2) WTO의 보조금규제

WTO의 보조금 규제는 1995년 7월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되고 있는

협정이다. 그러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일반규정, 금지보조금, 조치 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상계조치, 기구, 통보와 감시, 개발도상국회원, 경과조치, 분쟁해결 및 부속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보조금이란 수혜자의 혜택으로 나타난 정부의 재정적 기여 또는 소득 내지 가격지지를 의미한다. 이때 민간기업이 보조금 지급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보조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이 그것이다. 이중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재정적 기여와 이로 인한 혜택의 부여를 충족시키며 ②사전적 특정성 또는 사후적 특정성 중의 어느 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서 사전적 특정성이란 보조금 지불에 관한 법규나 규정 등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정성을 말한다. 이러한 특정성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공여당국 또는 해당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요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 기준 내지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여기서 객관적이라 함은 중립적이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으며, 공평한 기준 또는 조건하에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혜요건이 자동적이며 객관적인 요건과 기준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비해 사후적 특정성은 법규 등에서 외견상 사전적 특정성을 갖지 않더라도, 사후적으로 그 보조금이 특정성을 갖는 것으로 ①보조금이 제한된 숫자의 특정기업들에 배정된 경우 ②특정기업이 압도적으로 사용한 경우 ③특정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이 배정된 경우 ④공여기관의 보조금 지급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이 행사된 방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정성을 띤 보조금은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다른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보조금)이 된다.

이중 금지보조금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법률적으로는 수출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실제로는 예상되는 수출 또는 실제의 수출이나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수출장벽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수출품에 비해 국산품 사용에 우대를 취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즉 국산품사용 의무부과, 수입대체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치가가능보조금은 WTO에서 정의된 보조금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GATT 2조에 따른 양허혜택을 무효화 내지 침해하거나, 타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이다.

허용보조금은 특정적이지 않은 모든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더라도 ①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한 대학 및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로서 산업적 연구비용의 경우 75%이내, 경쟁 전 개발활동 비용의 경우 50%이내 ②낙후지역에 제공되는 지역내 비특정적인 지원 ③새로운 환경기준에 기존시설의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소요경비의 20%이내에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급이 허용되는 보조금은 비특정적이거나 특정적이더라도 연구개발, 낙후지역개발,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만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국제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우리 나라는 1995년 7월부터 중소기업관련법에서 특정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각종 연구결과들도 대체로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성소미 외, 1995)

이와 같이 이제는 특정기업이나 산업이 정부의 보호아래 성장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특정성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공여기관의 재량상 특정성, 특정기업에 의한 독점적 이용 등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수립될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경우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조정될 것이다.

2.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중소기업자금시장

현재 우리 나라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급속히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기존 금융기관이 공익성, 공공성을 띤 기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최근 퇴조하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기업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화는 금리자유화,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화,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화 등을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그 동안 정부가 정책금융 등을 통해 실시해오던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정책수단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째는 긍정적 영향으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금융을 수익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충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기능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은 건전경영에 힘을 쓰게 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간 경쟁이 본격화됨으로써 금융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정적 영향으로는 금리자유화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원가상승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에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정책금융의 축소,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피, 단기대출 위주의 자금운용 등이 예상된다.

제3장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실태

제1절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변천

1. 중소기업정책의 기반구축(1962-1971)

가. 제1차 계획기간(1962-1966)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의식이 고취된 것은 1950년대 초의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조성책이 마련된 때였다.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마찰이 표면화되어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즉, 전후 원조물자의 도입과 정부의 복구사업 등으로 경제재건이 착실하게 진척되었으나 당시의 경제부흥정책이 대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불균형성장의 기조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원조물자의 공급이 줄어들고 경제안정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된 1960년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경공업의 육성,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촉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을 조직화하기 위해 상공부에 중소기업 전담기구인 중소기업과를 설치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 기간 중에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관한임시조치법(19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중소기업조정법(1966)」, 「수출진흥법(1962)」, 「중소기업기본법(1966)」 등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에는 수출산업화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었는데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시책에서도 수출전환대책, 수출특화산업육성시책 등 수출산업화시책이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초기의 개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한정된 자원을 투자효율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여 배분하는 성장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중소기업시책에서도 중점육성업종을 선정하여 금융지원, 경영 및 기술지도면에서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¹⁴⁾

14) 김선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유치방안」, 연구보고서 제162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2, pp. 9-12.

나. 제2차 계획기간(1967-1971)

1960년대는 우리경제가 자립과 근대화를 지향하여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고도성장을 이룩한 획기적인 시기였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1971년까지 2차에 걸쳐 성공리에 완수됨에 따라 우리경제는 급속한 공업화와 더불어 산업구조가 근대화되었다. 그리고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에 의한 수출산업화로 생산력기반이 확충되고 기업의 경영체질이 강화되었다.

중소기업정책도 이러한 의욕적인 성장정책에 발맞추어 경제개발부문에 대한 보완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는 중소기업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이 경제개발계획에 명시됨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이 국가경제의 큰 흐름속에서 부문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발전이 따른 여건변동에 정책내용을 적응시키면서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그 동안 이룩하여 온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왕성한 투자요인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대외개방확대에 따라 생산력기반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비중이 두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의 목표도 개방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에 추진된 주요 중소기업시책은 기존의 시책을 보완, 정비, 강화하는 한편 계열화조성, 기업합병시책 등의 근대화시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생겨난 지역불균형 발전이란 애로요인을 타개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지방공업의 육성책이 수립, 추진되었다.

2.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중소기업 구조개선(1972-1981)

가. 제3차 계획기간(1972-1976)

1970년대에 들어서도 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함께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노동집약적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면서 경공업중심의 대외지향적인 성장전략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는 그 동안 급속한 공업화 정책을 추구한 결과 구조적으로 외자 의존적 성장패턴의 정착과 수출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그 결과 대외적으로는 해외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고, 대내적으로는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성장에

따른 이중구조의 형성이 초래되어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자주적 경제구조의 달성을 위하여 농촌경제의 혁신적 개발, 수출의 획기적 증대,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 의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중점 목표로 시행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계열화의 여건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계, 전기기기, 자동차 등 조립공업부문에서 대기업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하는 하청중소기업의 형성을 그 기초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제3차 5개년계획의 정책기조하에 전개된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중소기업의 수출산업으로서의 지속적 성장, 대기업의 계열기업으로서의 구조개편, 그리고 정책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합리화정책의 집중적 실시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1974)」,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1975)」 등을 제정하였다. 주요 추진시책으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의 유형별 중점육성, 계열화산업의 본격적 전개, 중소기업형 전문 기계공장의 육성과 농촌공업육성을 위한 농가공품 개발과 새마을공장 건설, 그리고 「8.3경제조치」 등 금융지원조치를 들 수 있다.

나. 제4차 계획기간(1977-1981)

1970년대 후반 우리 경제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산업사회로 점차 이행되고 산업체제 또한 대외지향적인 개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이상으로 급격한 질적 변화와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석유 및 자원파동으로 인하여 순조로웠던 우리 경제의 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적응력향상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책을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로써 1978년 「중소기업진흥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동시에 그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제도와 현실간에 일치하지 않은 점이 많았던 중소기업관계법령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크게 정비하였다. 또한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 중소기업보호육성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정책 입안을 위한 법적 기반은 물론 산업구조의 내실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약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육성책은 과거의 보호정책측면에서 탈피하여

산업정책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이 확립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전개된 주요 중소기업시책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 근대화 및 협동화사업의 추진, 전문화 및 계열화사업의 강화, 경영 및 기술지도의 강화, 금융지원의 확대 등으로 구분되는 바, 이들 시책들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적응력강화를 위한 근대화에 역점을 두어졌다는 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3. 중소기업정책의 다양화 및 활성화(1982-1990)

가. 제5차 계획기간(1982-1986)

1980년대 초의 중소기업정책은 1970년대의 중화학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야기된 각종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종래와 같이 사회보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제효율성의 차원에서 육성하고, 자립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두어졌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①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 강화 ②대기업과의 분업적 협력관계 제고 ③안정적 사업활동 보장 ④기술지원 강화 ⑤지방공업 육성 ⑥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였다.

동 기간 중 제정된 중소기업관련법으로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198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1983)」,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8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1984)」,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등이 있다. 이 기간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시책으로는 유망중소기업의 발굴·지원, 창업촉진, 기술개발지원, 부품 및 소재생산, 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나. 1987-1990년

우리 경제가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안정적 경영환경은 1980년대 중반이후 수요, 임금, 기술, 환율, 국제관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는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쳐 많은 중소기업들이 존립기반을 재구축하거나 경영관리를 혁신함으로써 급격한 환경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중소기업정책은 환경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이 임금상승, 급속한 시장 개방, 수요의 고급화 및 다양화 등과 같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정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종래와 다른 지식중심,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이행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89년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확충, 자동화 및 정보화,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는 구조조정시책을 펴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을 위해 1989년 2월 2개의 중소기업전담 민간은행(동남은행 및 대동은행)을 설립하였으며 기술개발자금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조흥리스회사 등 8개의 지방리스회사도 설립하였다. 한편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 중소기업 기술·기능인력수급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복지후생관련 투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4. 1990년대

1990년대 들어서도 경제안정화시책과 병행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책을 시행하는 한편, 금융자유화, 개방화의 진전 및 WTO체제의 출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availability) 확대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동 기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와 기구를 대폭적으로 정비하였다. 우선 이때까지 중소기업기본법을 정점으로 집행법적 성격의 7개 법률을 통폐합하여 총 8개 법률을 중소기업의 창업, 중소기업의 육성, 대기업과의 사업협력, 중소기업의 조직화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1995년 1월까지 5개 법률로 단순·체계화하였다(표 3-1 참조). 또한 1996년 2월 중소기업청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총괄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표 3-1> 중소기업 관련 법률 개편체계

종 전		개 편
중소기업기본법(1996년 제정)		중소기업기본법
구조 조정 시책	중소기업창업지원법('86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법('78제정)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89제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81제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 조직 시책	중소기업사업조정법('61제정)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75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61제정)	

동 기간동안 추진되어온 지원시책을 보면 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인상, 업체별 상업어음할인한도 폐지,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자금지원 확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및 중소기업 부도방지 특별자금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금융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한국은행의 재할인제도를 종전의 자동재할인방식에서 총액한도대출제로 개편하였으며 정책자금의 지원방식을 산업별 지원방식에서 기술개발, 중소기업 구조조정 등 기능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종전 제조업에만 국한되었던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에 유통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였다. 특히 자금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및 보증한도 확대, 소액특례보증제도 시행, 각 도별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2절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유형 및 조건

1. 기업자금의 종류 및 조달방법

기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경영능력, 경쟁력 있는 기술, 기업 활동에 관한 각종 규제와 관행, 세무 및 회계, 금융의 이용 등에 관한 지식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능력 즉 기업의 자금관리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달하는 자금을 기업자금이라 하는데 기업자금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① 자금의 귀속관계에 의한 분류

기업자금은 자금의 귀속관계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분류된다. 자기자본이란 내부자금과 주식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서 상환의무가 없는 자금을 의미하며 증자, 주식발행, 내부유보, 감가상각충당금 등이 해당되며 타인자본이란 사채발행, 장·단기차입금,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 장래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자금을 말한다.

② 자금의 조달경로에 의한 분류

자금의 조달경로에 따라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부자금이란 내부유보 및 감가상각충당금 등 기업내부적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말하며 외부자금이란 증권발행(주식,사채) 등의 직접금융·금융기관차입금(단기,장기) 등의 간접금융 및 기업간신용(지급어음,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을 말한다.

③ 자금의 상환기간에 의한 분류

자금의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으로 분류되며 단기자금이란 통상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고 장기자금이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소요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④ 자금의 용도에 의한 분류

자금의 용도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분류되는데 운전자금이란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부분이 1년 이내의 단기자금이며 시설자금은 토지, 건물, 기계의 구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서 보통 1년 이상의 장기자금이 대부분이다.

⑤ 자원의 성격에 따른 분류

기업자금은 자원의 성격에 따라 재정자금과 금융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재정자금이란 정부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특정산업이나 특정부문에 지원하기 위해 조세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말하며 금융자금이란 금융기관이 자체 조달하여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⑥ 통화표시에 따른 분류

기업자금은 통화표시에 따라 원화자금과 외화자금으로 분류되는데 원화자금이란 원화표시로 대출하여 원리금의 상환도 원화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외화자금이란 특정 외화표시로 대출하여 원리금의 상환이 당해 외화로 이루어지는 자금을 말한다. 외화자금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하여 해외시설 도입 등 해외지급을 위한 자문에 한해 용자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예외적인 경우로서 중소기업의 국산기계구입자금, 신규개발국산기계구입자금 등 국내지급을 위한 자문에 일부 허용하고 있다.

기업자금의 조달방법은 개인저축을 비롯하여 친척 및 친구, 개인투자가, 투자회사, 거래기업,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투자 또는 차입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방법은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며 최근 들어 금리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체로 중소기업은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에, 내부자금보다는 외부자금에, 장기자금보다는 단기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편이다. 대기업이 은행이나 비은행금융기관 등 간접금융지원으로부터 점차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의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에 반하여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의 자금지원정책도 이 점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2.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종류와 개요

현행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는 크게 ①재정자금 대출제도, ②중소기업 전담은행제도, ③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 우대제도, ④중소기업 신용보완제도, ⑤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⑥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산업구조고도화 차원에서 국가경제적으로 기여도가 크고 성장성과 자생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단기·응급조치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품질 및 기술력의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운전자금보다는 장기저리의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금융자유화와 국제화 진전에 따라 금리면에서는 시장기능을 살려나가는 한편 신용대출 활성화, 보증확대 등을 통한 자금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을 증대시키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 재정자금 대출제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촉진,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등을 중점 지원할 목적으로 각종 특별법 등에 의해 조성된 기금과 별도 조성된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장기저리로 지원해주거나 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재원을 확보한 후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통상 일반금융자금에 비해 대출기간이 장기(주로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금리수준도 연 6~7% 정도로 낮은 편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자금은 자금의 종류별로 지원대상, 총지원규모 및 업체별·자금용도별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자금의 추천기관 및 배정시기도 각기 다르다.¹⁵⁾

15) 재정자금 및 기타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인터넷 사이트 참조. <http://www.smba.go.kr>

<표 3-2> 재정자금의 종류

담당	자금종류	지원부서	신청(접수)기관	융자기관
통상 산업부	산업기반 기금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사업	금융, CALS체계 등 : 통상산업부	각 금융 기관
			신발 : 신발산업협회	
			직물·편직·봉제·염색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환경설비 : 한국기계 공업진흥회	
			기타 : 한국기계 공업진흥회	
유통합리화사업	중기청, 지방청 및 사무소			
중소기업기반 조성사업	각 금융기관			
통상 산업부	산업기술 기금	신제품 개발사업	기계 : 일반소재부품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각 금융 기관
			전자부품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섬유소재부품 : 섬유산업연합회	
첨단기술개발사업	제품디자인부서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중소 기업 청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기술 융합화, 협동화, 입지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금융 기관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농공단지입주지원(중음 식료품제조업)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통상 산업 부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	해외시장개척단참가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홍보, 디자인개발, 국제규격획득, 해외시장 공동진출, 자사브랜드개발, 해외유통망 획득	한국무역협회	각 금융 기관
통상 산업부	에너지 이용 합리 화 자금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에너지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에너지 관리공단	각 금융 기관
통상 산업부	특정물질 사용 합리 화 자금	특정물질 배출억제 및 이용촉진 시설기술개발자 금	한국 정밀화학 공업 진흥회	중소기업은행, 강 기신용은행
통상 산업부	가스안전기금	가스유통구조개선	한국가스안전공사, LP가스공업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회 LP가스판매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국 민, 서울, 신용, 산 업, 한국기술금융
중소 기업 청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	연쇄도산방지대출, 어음대출, 소액대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
		공동구관사업자금		

담당	자금종류	지원부문	신청(접수)기관	융자기관
통상산업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자금	설비 및 운영자금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 단체서 결정한 금융기관
재경원	중소할인어음	상거래 수취어음 할인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환경부	환경개선지원자 금	환경오염방지시설	환경관리공단	각 금융기관
		환경기술산업화		
		환경기술연구개발		
환경부	재활용산업육성 자금	재활용시설설치	한국자원 재생공사	각 금융기관 기술진흥금융
		재활용기술개발		
정보통신부	정보화 촉진 기 금	정보통신설비 구입	정보통신 연구관리단	각 금융기관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기술금융, 한국기술진흥금융
		및 시설개체		
		정보통신기술개발		
		국책연구개발지원		
과학 기술처	과학기술진흥용기 금	연구개발지원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종합기술금융
보건 복지부	민간병원재정 시설자금	민간병원 병상확충 응급의료센터 건축, 장비구입	관할 시·군·구청	중소기업은행, 농협
보건복지부	장래식당 재정시설자금	전문장래식당 신축 병원부설 장래식당 증축	관할 시·군·구청	중소기업은행
보건복지부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보육시설 신규설치 또는 증축	관할 시·군·구청	농협, 평화은행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자 금	유료양로원, 노인 양로원, 노인전문병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외관, 동화, 보람, 평화은행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기금	장애인고용 시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평화, 산업, 농협 국민은행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부	산업재해예방기 금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장비	한국산업안전공단	각 금융기관
노동부	고용보험 기금	직업훈련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산업인력관리공단	조흥, 신한, 동화, 상업, 동남, 평화은행
노동부	중소기업근로자 복지 진흥기금	복지시설 설치 및 개보수	근로복지공단	평화은행
문화체육부	국민체육진흥기 금	우수체육용구 생산 설비 및 연구개발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외관은행
문화체육부	관광진흥 개발기금	외화획득을 위한 운영자금	한국관광협회 일반여행업협회	각 금융기관 산업은행
		관광시설 건설 및 개보수	산업은행	
국방부	방위산업육성기 금	연구개발, 원자재비축	국방부	산업은행
건설 교통부	국민주택기금	다세대주택 건설 다가구단독 주택 건설 임대주택 건설 조립식주택 설비 공장 설립	주택은행	주택은행
통일원	남북협력기금	교역 및 경제협력 사 업	통일원	한국수출입은행

나. 중소기업 전담은행제도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동은행 및 동남은행 등 중소기업 전담은행들은 일반자금 외에 다음과 같이 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부도방지특별자금, 소기업자금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자금의 재원은 전담은행들이 자체 조달한 금융자금으로서 지원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나 업체당 적정지원규모 등의 판단에 있어 여타 금융자금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지만 일반적으로 금리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① 부도방지특별자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전담은행에서 거래기업부도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특별자금

② 영세중소사업자지원자금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전담은행과 평화은행에서 지원하는 자금

③ 소기업지원자금

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및 자가공장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전담은행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

④ 외화표시 시설자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전담은행과 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의 신규개발국산기계구입 및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하는 외화표시 대출

⑤ 창업지원자금

16) 이중에서 대동은행과 동남은행은 IMF이후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퇴출 조치를 당해(동화, 경기, 충청은행 포함 5개 은행) 각각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 자산부채인수방식(P & A 방식 : Purchase and Assumption)으로 흡수, 합병되었다.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전담은행에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 자금 및 운전자금을 대출

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자금대출 우대제도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자금배분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대출 중 일정비율 이상이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의무 비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총액대출한도(재할인)의 은행별 한도배정 및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시에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각 은행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기구의 설치 및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 등을 마련하여 운용토록 독려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라. 중소기업 신용보완제도

신용보완제도는 신용보증기관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이들 중소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러한 신용보증기관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각 시·도별로 설립되어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 등이 있는데 기관별로 설립목적이 달라 취급업무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1) 신용보증기금

가) 신용보증제도의 기본구조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본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신용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며 동 제도는 기업(채무자), 금융기관(채권자) 및 신용보증기금(보증인)간의 3자 관계에 의한 금융중개구조를 이루고 있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방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그 재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다.¹⁷⁾

17) 현행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금융기관은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율 0.2%에 해당되는 금액을 2000년말까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토록 되어 있으며, 정부는 필요시 각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적정한 대위변제 준비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총체적인 신용보증 규모를 기본재산의 일정배수 범위내로 제한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행 신용보증기금법령상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7배로 정하여져 있다.

나) 신용보증의 종류

- ① 대출보증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②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③ 제2금융보증 : 중소기업이 제2금융기관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받을 때 이용되는 보증
- ④ 사채보증 :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제도
- ⑤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코자 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⑥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⑦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 등으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⑧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해 주는 제도
- ⑨ 무역어음 인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기관에 인수시키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⑩ 상거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거래처와의 상거래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

다) 심사방법 및 지원금액결정

신용보증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 등을 경유하여 보증신청

을 하거나 기금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신용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기업의 신용도, 사업전망, 보증신청금액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게되며 이때 소정의 심사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신청내용에 따라 정식심사기준표, 우량중소기업용심사기준표, 간이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다.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기업규모, 자금용도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한도금액 범위안에서 보증금액이 결정된다. 이때 기업의 보증이용에 편리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거래제도, 연계보증제도, 기한연장제도, 위탁보증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최근에 상업어음 할인보증 특별지원 제도('95. 8. 부분시행후 '96. 1. 대폭 확대실시), 3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한 24시간 이내 보증서 발급제도('96. 2. 시행), 통합 갱신보증제도('96. 1. 시행) 등의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¹⁸⁾

2) 기술신용보증기금

가) 기술신용보증제도의 개요

기술신용보증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주는 제도로써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나) 보증대상기업

기술신용보증의 대상기업으로는 신기술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신기술사업을 운영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 1,000억원 이하의 기업, 산업기술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신용보증의 경우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 1,000억원 이하의 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증대상이다.

다) 보증의 종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보증은 기술신용보증과 일반신용보증으로 구분되

18)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에 대한 특별지원시책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것.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금융이용길잡이」, 1998. 10 available in <http://www.smba.go.kr/>

는데 기술신용보증에는 기술대출보증과 기술사채보증이 있고 일반신용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와 같다.

① 기술대출보증 :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부터 기술개발자금 등을 대출, 급부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데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이다. 보증대상채무는 특별법으로 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정보화 촉진기금), 금융기관의 기술개발관련자금,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조건부융자 및 일반융자금,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대상기관의 대출금 등이며 보증대상기관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일반 금융기관이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투·융자 및 시설대여, 경영기술지도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국내에는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기술금융, 한국개발투자, 한국기술진흥금융이 있으며 일반금융기관으로는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이 있다.

② 기술사채인수보증 :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사채(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는 사채는 제외) 인수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보증대상채무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고, 발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발행방법이 비공모(사모발행)인 기명식 사채이어야 하며 보증대상기관은 기술대출보증과 같다.

라) 기술우대보증제도

NT(중소기업청의 New Technology), KT(국산신기술)마크 획득기업 등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또는 각종 기술개발 관련자금 등을 정하여 이들 기업 또는 자금에 대하여는 기술력 위주의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거치게 하는 한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이 손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대상자금으로는 산업기반자금 등 기술개발자금과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기술관련 여러 가지 자금이 포함되며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는 보증심사때 기술력배점을 60/100(기술신용보증심사에서는 20/100)으로 높여 우대하고 있다.

마) 금융기관 추천보증제도

금융기관이 기업실태조사서를 첨부하여 보증을 추천하면 기술신용 보증기금이 신용조사절차를 생략하고, 기업체 가동여부등을 확인하고 간이조사서에 의거하여 심사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며 신규로 보증거래하는 제조업, 도소매업 또는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지역신용보증조합

가)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개요

'95. 2. 9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확정된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에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내 지방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조합의 법적 지위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설립주체는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이고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중소기업이며 1998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6개의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표 3-3> 지역신용보증조합의 현황

구분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설립일	'96. 3. 19	'96. 5. 15	'96. 8. 24	'96. 11. 7	'97. 4. 1	'97. 6. 20
출연금 (백만원)	38,300	17,230	12,580	30,328	11,812	17,500
보증종류	대출보증 할인어음보증	대출보증 비은행대출보증	대출보증 어음보증	대출보증 지급보증의보증 어음보증 비은행대출보증	대출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농수축협)	대출보증
보증대상 업체	· 도지원자금 · 도선정유망 중소기업 · ISO9000 · 출연단체 추천기업 · 전중소제조 업 (5천만원이하)	· 도지원자금 · 시군지원자금 · 도선정유망중 소기업 · ISO9000 · 100PPM · 출연금융기관, 대기업추천기 업 · 전중소제조업 (5천만원이하)	전중소기업 (제조업)	전중소기업 (제조업)	전중소기업 (제조업)	전중소기업 (제조업)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98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1998, p. 183.

주 : '97. 12. 29에 설립한 인천지역신보는 제외

나) 재원조성방법

최초 설립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연고 대기업, 지역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로 각각 출연하고 설립재원의 조성후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과 재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신용보증조합이 보증한 기업중 도산으로 인해 채권기관에 대위변제한 경우, 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의 원보증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다.

다) 신용보증업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업무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나, 설립 기본재산의 취약성으로 동일기업당 지원되는 보증금액한도가 소액인 것이 지역신용보증조합의 특징이다.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는 기금의 기보증금액이 일반보증한도인 15억원 범위내에서 동일기업당 2억원이며 보증대상기업은 해당지역내 소재 중소기업자로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97년까지는 한정적으로 대출보증과 어음보증만 취급하고 있으며 기본재산 출연에 참여한 대기업의 협력업체, 출연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자금지원을 받아야 할 기업, 수출지원자금을 받아야 할 기업 등을 우선적 보증대상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3-4>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차이

구 분	지역신용보증조합	신용·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주체	지역내 기업 및 금융기관	정부
운영주체	중소기업인(조합원)	정부
재원조성	민·관 공동출연	정부, 금융기관
법적지위	사단법인	특별법인
관련규정	민법상의 정관, 업무방법서, 내부규정 등	신용보증기금법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대상	지역내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신용보증한도	3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재정지원	기금이 보증액의 100분의 50을 재보증	정부, 금융기관
신용조사	자체조사, 외부조사 병행	자체조사
보증졸업제	5년	없음

주 : 위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내용은 지역신보의 정관 및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마.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정부가 창업투자회사 등에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장기대출 및 자본참여 형태로 지원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기관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에 대해 투자 또는 장기융자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며 구체적인 지원업종과 지원방식 등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② 중소기업상담회사

기술, 자본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창업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각종 창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라 사업타당성 평가를 위한 용역사업,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사업자의 알선, 창업에 관한 절차의 대형과 관련되는 용역사업,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 및 정보제공 그리고 창업관련 용역대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③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투자와 융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바. 중소기업 직접금융조달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공개요건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한편, 유상증자의 우선순위 조정기준에도 비계열 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공개기업에 대해서는 초과유보소득 면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면세, 회사채발행한도 확대 및 신종사채발행 허용 등 각종 혜택 부여하며 특히 주식

장외시장제도(코스닥시장)를 통해 증권거래소 상장기준에 미달하는 우량중소기업 또는 모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¹⁹⁾

3.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제도

가. 제도의 개요

'94년 1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앙과 자치단체간 지원협력체제의 일환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연계방식(Matching Fund)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지방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그 동안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역간 구별 없이 지원해오던 경쟁력강화를 위한 각종 시설투자 지원자금을 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고자 기존의 구조조정자금을 전환하여 1994년부터 조성해오고 있다.

<표 3-5>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현황

구분	'94	'95	'96	'97
정부	2,000	2,500	3,656	4,608
지방	1,756	2,372	3,332	3,894
계	3,756	4,872	6,988	8,502

출처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1997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7, p. 187

이 자금은 시도의 중소기업육성계획의 검토결과와 자체자금 조성규모 및 시도별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일반, 낙후지역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계지원비율을 차등지원하는 정부자금과 시도의 자체조성자금으로 공동조성되어 개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다.²⁰⁾

19) 주식장외(KOSDAQ)시장이란 증권업협회에 장외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을 코스닥증권(주)를 통하여 매매하는 시장으로서 기존 증권거래와는 달리 매매를 위한 건물, Floor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갖춘 전자거래시장이며 고개의 주문을 증권회사로부터 전달받아 매매가 형성되도록 중개하는 매매중개회사이다.

20)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문헌을 참조. 중소기업청, 「'98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지침」, 1998.

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영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시도는 이 운영지침 내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한다. '94 ~ '95년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과는 달리 '96년부터는 제조업 중심의 육성에서 벗어나 지원대상업체를 물류, 유통, 지식 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하여 지역간은 물론 산업간 균등 발전을 꾀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대상은 크게 구조조정, 입지지원, 특별지원지역지원, 중소유통업구조개선,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이며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30억원 이내(중소기업구조조정지금은 11억원 이내)이고 이율은 8.5%이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3-6>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사업내용

지원사업	지 원 내 용
시설개체 (구조조정)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소기업지원, 기술지도연계, 창업, 사업전환, 대기업협력, 지역특화산업을 추진하는 개별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의 지원
중소기업 입지지원	○공장용지 임대사업 :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 :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
특별지원 지역지원	○전북, 전남, 강원도의 5개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공장용지매입, 공장설치, 시설설치, 경영안정, 공동경영안정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자금 지원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 지원 ○공동창고 건립자금 지원

주 : 특별지원지역의 공단은 강원도의 북평국가공단, 북평지방공단, 전남의 대불국가공단, 전북의 정읍 제2공단, 정읍 제3공단 등임

제 3 절 중소기업 지원자금 재정규모 및 운용현황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 규모

우리 나라 정부 예산 중 중소기업지원예산의 규모는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정부 재정 중 중소기업지원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정부재정규모	407,646	476,262	557,794	633,526	714,006
중소기업지원 관련예산	23,670	28,975	31,630	26,209	29,937
구성비	5.8	6	5.7	4.1	4.2

정부재정규모와 중소기업지원 관련예산을 비교해 보면, 구성비가 93년의 5.8%에 비해 97년 4.2%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96년 이후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 보험사업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으로써 정부의 중소기업관련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최근의 중소기업지원예산은 대략 정부재정규모 중 4%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보면,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계	25,973	31,061	34,103	30,691	35,015
정부기관(A)	23,670	28,975	31,630	26,209	29,937
지방기관(B)	2,303	2,086	2,473	4,482	5,078
구성비(B/A)	9.7	7.2	7.8	17.1	19

위 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에 비해, 93년에서 95년까지는 7%에서 10%내였던 것이, 96년, 97년에는 각각 17.1%, 19%로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의 관련예산 중, 산업재해보상 보험사업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관련예산이 96년에 4,48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8배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예산을 각각의 자치단체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자치단체별 중소기업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평균	표준편차
계	2,303	2,086	2,473	4,482	5,078	3,284.4	1,241.7
서울특별시	266	493	207	731	1,122	563.8	334.8
부산광역시	29	49	228	352	408	213.2	153.3
대구광역시	84	131	164	457	499	267	174.7
광주광역시	93	55	110	127	173	111.6	38.9
대전광역시	7	57	104	129	156	90.6	53.0
인천광역시	106	134	116	395	352	220.6	125.9
경기도	610	509	600	814	950	696.6	161.3
강원도	10	10	53	183	217	94.6	88.1
충청남도	127	56	62	188	146	115.8	50.4
충청북도	58	104	103	90	53	81.6	21.9
경상남도	316	230	266	285	187	256.8	44.7
경상북도	349	115	132	280	426	260.4	121.1
전라남도	83	65	214	235	234	166.2	75.9
전라북도	110	67	102	150	124	110.6	27.2
제주도	55	11	12	66	31	35	22.3
평균	153.5	139.1	164.9	298.8	338.5		
표준편차	159.2	151.6	134.7	215.7	304.9		

위 표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관련 지원재정규모는 평균적으로 볼 때, 93년의 153.5억 원에서 97년의 338.5억 원으로 계속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편차를 보면, 점차 지방자치단체간 지원금액의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3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중소기업 지원관련 재정규모 편차가 159.2억 원, 94년과 95년에는 각각 151.6억 원, 134.7억 원으로 감소했는데, 96년에는 215.7억 원, 97년에는 304.9억 원으로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97년도 지방자치단체간 지원규모를 볼 때,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부산, 인천 순으로 재정력이 큰 자치단체가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중소기업 관련자금지원의 지방자치단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연도간 편차를 보면, 최고 334.8억 원(서울특별시)에서 최

저 21.9억 원(충청북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자치단체별로도 작게는 20억 원대에서 크게는 300억대까지 연도별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재정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에 따른 편차발생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증감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도 생각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중소기업 관련예산의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관련자금 중 대표적인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 관해 알아본다.

2.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운용현황(총괄)

중소기업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자금과 관련한 재원 및 대출액을 보면, 다음 <표 3-10>과 같다.

<표 3-10>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운용현황(총괄)

(단위 : 억원, %)

구 분	재 원	대 출 액	구 성 비
94년	5,000	2,508	50.2
95년	10,000	9,344	93.4
96년	15,000	11,203	74.7
97년	20,000	13,277	66.3
계	63,200	46,967	74.3

위 표를 보면, 94년부터 매년 5,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조달되었고, 조달재원 중 94년은 50.2%가, 95년에는 93.4%, 96년과 97년에는 74.7%, 66.3%가 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대출에 관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보면, 다음 <표 3-11>과 같다.

<표 3-11>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대출운용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94년	95년	96년	97년	계	
신청(A)	업체수	2,468	3,892	4,685	6,924	17,969
	금액	10,749	17,429	20,485	28,096	76,749
추천(B)	업체수	2,096	2,759	3,935	5,665	14,455
	금액	7,879	11,326	15,203	19,102	53,510
대출(C)	업체수	1,028	2,723	3,593	4,130	11,474
	금액	2,508	9,344	11,203	13,277	36,332
추천 대비 신청(B/A)	업체수	84.9	70.9	84.0	81.8	80.4
	금액	73.3	65	74.2	68	69.7
대출 대비 추천(C/B)	업체수	49.0	98.7	91.3	72.9	79.4
	금액	31.0	82.5	73.7	69.5	67.9
대출 대비 신청(C/A)	업체수	41.7	67	76.7	59.6	63.9
	금액	23.3	53.6	54.7	47.3	47.3

위 표를 보면, 신청업체의 수와 신청금액뿐만 아니라 추천 및 대출의 경우도 업체 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원의 규모가 매년 5,000억 원씩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개발이 계속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금 신청과 추천 및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구성비를 보면, 평균적으로 신청업체의 80.4%, 신청금액의 69.7%가 추천되며, 그중 업체는 79.4%가, 금액은 67.9%가 실제 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신청과 대출간의 구성비로 보면, 신청업체의 63.9%, 신청금액의 47.3%가 대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신청금액에 대한 대출비율이 47.3%인 점을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해당 업체의 필요 금액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2억원의 자금만을 지원한다면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을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재원의 확충을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기업의 자금수요가 과장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기업간에 배분하는 것인만큼 합리적 자금배분기준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크게 구조고도화자금, 창업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다음 <표 3-12>는 구조개선자금의 운용을 사업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3-12> 구조개선자금의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94년	95년	96년	97년 예산	계
구조고도화 자금	금액	550,354	1,061,903	1,282,893	1,704,570	4,599,720
	구성비	54.9	67.7	65.3	67.2	65.0
창업지원 자금	금액	16,995	25,365	31,290	34,190	107,840
	구성비	1.7	1.6	1.6	1.3	1.5
지방중소기 업육성자금	금액	434,362	481,961	648,987	799,156	2,364,466
	구성비	43.4	30.7	33.1	31.5	33.5
계	금액	1,001,711	1,569,229	1,963,167	2,537,916	7,072,02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위 표를 보면,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중 구조고도화자금이 평균적으로 6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자금은 1.5%,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3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비의 차이는 정책목적에 따른 사업실시로 인해 각 자금별로 신청업체수와 지원액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각 사업별로 운영현황을 분석한다.

3. 사업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운용현황

(1) 구조고도화자금

다음 <표 3-13>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의 운용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3>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94년	95년	96년	97년 예산
구조고도화사업		295,927	750,109	881,403	1,130,895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건 수 금 액	735 1347,722	1,447 451,924	2,246 647,686	2,600 870,068
-로봇트등 리스사업	건 수 금 액	- -	139 35,942	30 7,698	35 7,700
-협 동 화	건 수 금 액	57 80,462	103 175,839	92 164,532	101 181,498
-입 지	동지(동) 금 액	14 35,323	16 47,396	17 47,108	17 47,579
-단지조성 APT형공장	단지(동) 금 액	5 14,485	7 10,937	8 19,107	8 21,423
	지역(동) 금 액	9 20,839	9 36,449	9 28,001	9 26,156
-정 보 화 기반조성등	건 수 금 액	121 21,983	165 29,019	85 14,379	75 14,050
-회생특례지원	업체수 금 액	- -	- -	- -	20 10,000
-종합지원 센터컨립등	업체수 금 액	- -	2 10,000	- -	- -
-구조조정계속	업체수 금 액	166 23,437	- -	- -	- -
지도·연수사업등		20,469	35,471	39,368	44,513
-지도사업	업체수 금 액	2,159 6,615	2,627 10,076	3,031 13,311	3,100 13,724
-연수사업	인 원 금 액	33,619 5,885	32,901 7,511	40,606 10,268	36,420 12,858
-자동화센터 사업	인 원 금 액	- 2,639	- 9,052	807 6,196	2,000 9,336
-창업보육	개 수 금 액	4 2,640	7 4,973	7 5,428	7 3,400
-정보제공 국제협력	정보회원 금 액	16,493 2,690	18,246 3,859	18,721 4,165	25,000 5,195
구조고도경비, 신보보전		8,925	10,009	7,944	8,731
복권사업비		3	17,856	23,000	62,750
차입원리금 상환		206,035	226,370	302,592	435,341
관리비등		18,996	22,089	28,586	22,340
합 계		550,354	1,061,903	1,282,893	1,704,570

<표 3-13>에 따르면 구조고도화자금을 이용한 사업 중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구조 개선사업, 협동화사업, 입지사업, 정보화기반조성사업, 회생특례지원, 로봇트등 리스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외에 각종 지도·연수사업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창업지원자금

창업지원자금은 다음 <표 3-14>와 같다.

<표 3-14>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투·융자사업		23,224	13,510	15,200	23,583	30,684
-중소기업창업	건 수	-	-	-	-	-
투자회사투자	금 액	-	-	-	-	-
-중소기업창업	건 수	6	5	5	9	5
투자조합출자	금 액	5,924	6,110	5,600	14,000	5,600
-중소기업창업	건 수	35	20	20	16	24
투자회사용자	금 액	15,000	6,500	7,900	9,583	22,720
-중소기업상담	건 수	-	-	-	-	-
회사용자	금 액	-	-	-	-	-
-중소기업창업	건 수	2	2	2	-	2
보육센터용자	금 액	2,300	900	1,700	-	1,400
지원사업	금 액	957	1,208	1,525	1,538	1,360
-용역대금	건 소	196	277	432	614	546
지원	금 액	957	1,208	1,525	1,538	1,299
-창업강좌	개 소	-	-	-	-	12
지원	금 액	-	-	-	-	61
차입원금 상환		-	-	-	-	-
사업경비등		280	230	270	244	210
계		24,461	14,948	16,995	25,365	31,290

위 표를 보면, 창업지원사업은 크게 투·융자사업과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용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용역대금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나타나 있다.

(3)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중 특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조달된다. 조달 방식은 matching fund방식에 의하는데, 자치단체별로 연계지원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배정을 보면, 다음 <표 3-15>와 같다.

<표 3-15> 98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배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98년 지방비확보 계획	연계 지원비율	연계비율에 따른 정부지원액	정부의 실지원액	정부연계에 따른 실지원비율	전체지원비에 대한 구성비
서울	23,000	50	23,000	17,019	42.5	5.5
부산	18,766	55	22,932	16,968	47.5	5.4
대구	23,000	55	28,060	20,763	47.4	6.6
인천	25,000	50	25,000	19,498	42.5	5.8
광주	32,750	55	39,955	29,564	47.4	9.4
대전	9,000	55	10,980	8,124	47.4	2.5
울산	5,500	55	6,710	4,965	47.4	2.0
경기	60,000	50	60,000	44,396	42.5	14.3
강원	12,000	60	18,000	13,319	52.6	4.3
충북	10,000	60	15,000	11,099	52.6	3.6
충남	13,200	60	19,800	14,651	52.6	4.7
전북	12,740	60	19,110	14,140	52.6	4.6
전남	15,600	60	23,400	17,314	52.6	5.6
경북	15,500	60	23,250	17,204	52.6	5.5
경남	52,630	60	78,945	58,414	52.6	18.7
제주	4,200	60	6,300	4,662	52.6	1.5
계	332,886	60	420,442	311,100	48.3	100.0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는 연계지원비율이 50%,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55%이며, 나머지 시·도는 60%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정부의 지원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체지원액수에 대한 실지원액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남과 경기도 각각 18.7%, 1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광주(9.9%), 대구(6.7%)의 순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정부가 연계비율에 차등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지원은 특정 지역에 편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경남은 60%의 연계비율을 볼 때, 재정력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자체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지원에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편중 현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배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간 격차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원조달을 통해 마련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용현황은 다음 <표 3-16>과 같다.

<표 3-16>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지방중소기업육성지원		-	-	200,000	240,000	365,600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예탁 -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건 수	-	-	15	15	15
	금 액	-	-	200,000	240,000	355,600
	건 수	-	-	-	-	2
	금 액	-	-	-	-	10,000
농공입주기업육성		118,628	131,207	176,356	160,897	148,166
-입주기업 자금유통 신규입주기업 지원사업 대체입주기업 지원사업 경영정상화 지원사업	업체수	589	635	817	651	545
	금 액	118,628	131,207	176,356	160,897	148,166
	업체수	589	447	498	373	211
	금 액	118,628	97,027	121,527	111,055	76,605
	업체수	-	-	-	40	82
	업체수	-	-	-	9,592	25,162
	금 액	-	188	319	238	252
	금 액	-	34,180	54,829	40,250	46,399
차입원리금 상환		32,054	39,961	55,978	79,735	133,562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농공입주기업 자금상환	금 액	-	-	-	-	27,114
	금 액	32,054	39,961	55,978	79,735	106,448
사업경비등		840	879	979	1,198	1,498
일반관리비등		732	103	1,049	131	158
계		152,254	172,150	434,362	481,961	648,984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주요 사업은 지방중소기업육성지원, 농공입주기업육성 등이다. 그중 지원액수가 큰 것으로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예탁과 신규입주기업 지원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지방중소기업 자금지원의 문제점

1. 자금지원제도의 복잡·세분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총론적인 문제점의 하나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지나치게 다기화되어 있고 지원방법이나 절차가 복잡하여 정보에 취약한 중소기업으로서 쉽게 이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나 관련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지원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²¹⁾

첫째,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종류가 법적 근거와 지원기관에 따라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의 제도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정부 각 부처 및 금융기관, 관련 지원기관별로 다기화되어 있음은 물론 분야에 따라서도 창업, 입지, 구조개선, 유통, 정보화, 기술개발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지원대상에 따라서도 구별을 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조차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종류가 복잡한 것은 중소기업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분화되어 있는 탓도 있지만 아직도 복잡한 중소기업 관련법 체계의 영향도 크다. 정부는 1995년 1월 1일 8개의 중소기업관련법(5개 일반법, 3개 특별법)을 통폐합하여 5개 법으로 통합, 단순화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29일 이후 다시 3개의 특별조치법을 추가 제정하였으며²²⁾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94.1.7)까지 합하면 9개의 법률이 중소기업의 지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형편이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종류가 복잡, 다양하다보니 일부 제도가 성격상 중복되어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협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교육 등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각 시·도가 관리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중소기업 시설개체지원자금과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이 사실상 거의 동일하여 지방중

21) 홍순영,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중소기업학회 연구총서 제1집, 1995, 12, p. 290

22) 1995년 12월 29일 이후에 제정된 특별조치법으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 특별조치법」(‘95.12, 정부입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97.4, 의원입법),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97.8, 정부입법), 등 3가지법률이 있다.

소기업들이 양 기관을 동시에 접촉해야 하는 불편과 자금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각 지역에서 양 자금이 동일기업에 지원된 사례도 없지 않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양 기금 모두가 재원이 정부재정과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일반신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양 기금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극히 적은 실정이다.

2. 지원재원의 부족

중소기업 자금난의 구조적인 요인은 금융자금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편중적으로 지원되는 자금흐름의 왜곡에 기인하는 바 크지만²³⁾ 중소기업에 위한 자원자체의 절대적 규모가 부족한데도 원인이 크다.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그 종류의 다양함에 비해서는 재원의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수혜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원용한 바 크지만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재정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회계예산에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의 비중은 1994년 기준으로 2.55%로서 일본의 8.06%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비중이 낮은 것은 과거 자원조달이 어려웠던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의 관행이 유지되어 온 점과 발권력에 의한 금융적 수단이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는 재정적 수단보다 손쉽게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 크다.

따라서 재정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에 결국 정책금융의 대부분을 민간금융기관이 떠맡지 않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대출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담보대출을 관행화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전문 금융기관에 대한 재정출연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본이 거의 90%수준인데 비해서 우리 나라는 4%미만의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보면 전체 대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잔액기준으로는 1991년 56.8%에서 1997년 55.8%로 큰 변동이 없는 듯 보이지만 순증기준으로 보면 1991년 63.0%에서 1997년 22.5%로 크게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3. 자금지원의 형평성 문제

각종 지원자금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목적에 따라 자율성을 갖고 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금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이다. 그러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업별 연계비율에 따라 시·도가 확보한 지방자금규모에 비례하여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Matching Fund방식으로 지원되는 자금배분방식은 자칫 지역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그 동안 경제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경제성장의 격차가 상존해 있고 세원이 지역간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자치단체간에 재정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방비부담능력에 따라 정부자금을 배분할 경우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도간 재정자립도를 보면 1998년 현재 서울이 98.5%, 부산이 87.5%, 인천이 85.1%, 대전이 82.2%, 경기도가 80.5%, 대구가 78.1%, 울산이 77.0%, 경남이 37.9%, 충북, 36.1% 등인데 비해 광주는 68.4%, 전북이 22.4%, 전남이 20.3% 등으로 나타나 특별·광역시에 비해 도의 재정력이 낮은 편이며 수도권과 영남권지역에 비해 호남권의 재정여건이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역간 격차를 감안하여 시·도의 재정자립도와 공업생산실적을 고려한 차등지원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전국을 수도권, 일반지역, 낙후지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부연계비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폭 우대하고 있다.

<표 3-17>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정부대 지방 연계비율(시설개체사업, 1997년)

구분	수도권 시·도	일반 시·도	낙후 시·도
정부 : 지방	47.8 : 52.2	52.8 : 47.2	57.8 : 42.2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우대조치에도 불구하고 1998년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실제 정부지원액을 보면 전체 3,111억원중에서 수도권이 799.1억원(25.7%), 영남권이 1,183.1억원(38.0%), 호남권이 656.8억원(21.1%), 충청·강원권이 471.9억원

(15.2%)을 차지하여 수도권과 영남권이 전체 정부지원액의 64%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경우는 과도한 지방비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체사업추진을 위한 자원확보가 더욱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경우 육성자금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매년 전액 지방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마다 지방채 발행액이 누증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지역내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되기 때문에 대출자금의 실질적인 확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자부담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또 다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4. 자금조달의 높은 은행의존도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금융현황의 특성을 살펴보면 외부금융에 비해 내부금융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높은 부채의존도에 기인한다. 또한 외부금융 중에서도 특히 예금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은 것이 특징인데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 한국은행의 재할인제도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대부분 은행을 통해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8> 중소기업 차입금의 조달처 비율

구분	1993	1994	1995	1996
은행	78.7	78.9	78.4	79.0
은행이외 금융기관	11.7	11.9	12.1	11.9
회사채	6.9	6.7	7.2	6.7
사채	1.7	1.6	1.4	1.5
기타	1.0	0.9	0.9	0.9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민은행,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보고서」, 각년도.

그러나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자금조달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직접금융에 의한 대기업의 탈은행화의 영향으로 유망중소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지만 반면에 개방화와 자율화로 인해 상업금융기관의 자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간여와 조정이 줄어들고 정책금융이나 선별금융제도도 점차 축소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위축될 우려 또한 작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영업확장에 따른 은행권의 상대적 위축은 곧 중소기업의 원활한 차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특히 IMF이후 금융권의 구조조정과정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적용됨에 따라 수익대비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우량중소기업까지 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존속으로 퇴출된 5개 소형은행은 여신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에 운용해 온 은행으로서 향후 중소기업금융을 더욱 위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²⁴⁾

5. 과도한 담보대출 의존

우리 나라 중소기업금융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바로 담보대출관행이다.²⁵⁾ 신용대출이 정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역량과 상관없이 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담보의 유무이다. 따라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사업성과 성장성이 유망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차입이 쉽지 않아 자금조달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도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서 가장 큰 애로요인의 하나로 남고 있다.

우리 나라 금융기관은 금리규제 및 이로 인한 자금의 만성적 초과수요 그리고 취약한 재무구조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그 동안 담보대출을 관행처럼 지켜왔다. 즉 정부가 금리를 일정수준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금리차이 대신에 담보를

24) 금융감독위 자료에 따르면 5개 퇴출은행의 1998년 6월 10일 현재 중소기업대출 총액은 105,682억원으로 32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총액 1,247,044억원의 8.5%에 해당한다.

25) 정부에서 1998년 3월에 400개 모니터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IMF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과 신정부에 대한 건의」의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시급한 금융지원정책으로 「지원자금확대」(28.8%)에 이어 「신용보증지원 확대」가 15.8%로 두 번째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확보함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자금의 만성적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담보를 통해 채권을 손쉽게 확보하려는 관행을 유지하게 되었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위험이 높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담보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조합 등이 설립, 운영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직접 기업의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으나 신용보증절차가 까다롭고 기금의 주된 원천이 정부가 아닌 금융기관출연인데다 대위변제율도 높아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 3-19> 신용보증기관의 실태

(단위 : 억원, 개)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6
기본 재산	신 보	5,789	5,043	5,492	5,281	6,878	7,052	16,406
	기술신보	1,439	2,502	3,134	3,315	4,124	3,266	9,415
	계	7,228	7,545	8,626	8,596	11,002	10,318	25,821
정부 출연	신 보	870	900	2,400	2,900	3,500	4,000	4,925
	기술신보	770	600	900	1,200	1,500	2,000	2,575
	계	1,640	1,500	3,300	4,100	5,000	6,000	7,500
은행 출연	신 보	1,465	1,668	1,964	2,511	2,834	3,307	1,810
	기술신보	991	1,226	1,472	1,274	1,448	1,702	912
	계	2,456	2,894	3,436	3,785	5,880	5,009	2,722
대위 변제	신 보	4,610	3,959	4,375	6,845	5,050	7,357	9,320
	기술신보	1,493	1,224	2,060	2,621	2,832	4,350	4,398
	계	6,103	5,183	6,435	9,466	7,882	11,707	13,718

자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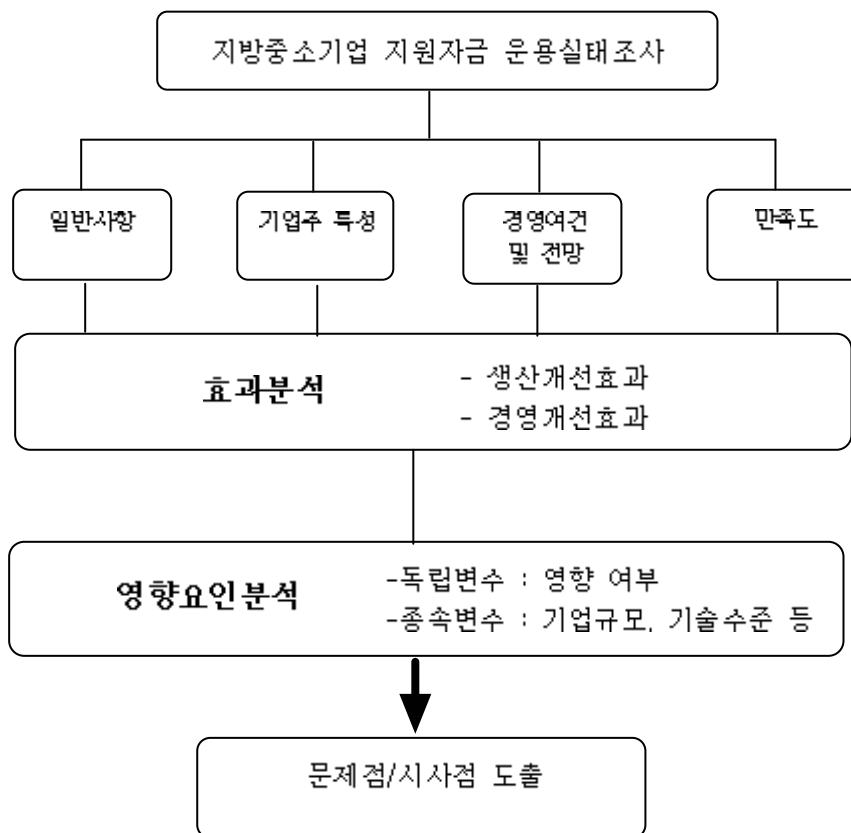
제4장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분석

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1. 분석의 틀

본 조사분석은 지방중소기업의 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지방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분석과 함께 효과 발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림 4-1> 조사분석의 틀



<그림 4-1>은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분석의 틀을 제시한 것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업체의 일반적 특성(기업형태등)과 기업주의 특성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분석을 거쳐 효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과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잠정적으로 <표 4-1>과 같이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발생 여부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경제적 요인(기업규모, 재무구조, 생산성, 기술수준 등)과 행태적 요인(기업주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표 4-1> 변수의 정의

변수별	요인별		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발생 여부			이선선택변수(예, 아니오)
독립 변수	기업 특성	경제적 요인	기업의 규모	상시 종업원수
			재무구조	(총자산-자기자본)/총자산
			생산성	매출액/상시 종업원수
			기술수준	연구개발비/매출액, 특허권 보유건수
		행태적 요인	기업경영 경험	이선선택변수(예, 아니오)

2. 자료수집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여건 파악,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자금지원의 성과 분석을 위한 조사연구의 대상으로 충청남도의 '9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들을 선정하였다. 충남의 경우 '97년 한해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업체가 653개 업체였다. 이 중 창업 목적의 융자신청업체를 제외한 융자신청업체는 336개 업체이며 이들 신청업체중 융자를 받은 기업은 265개, 탈락업체는 71개였다.

본 연구는 기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창업 목적의 용자신청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반면에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용자에서 탈락한 업체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조사대상 모집단의 수를 336개로 한정할 수 있었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1998년 11월 15일에서 25일의 기간동안 우편조사방식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우편조사에 따른 저조한 회수율(15%) 때문에 부득이 충청남도 청 기업지원과와 천안시청 공업과의 협조를 얻어 1999년 1월 20일에서 30일까지 2차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103부로 회수율은 30.65%로 최종 집계되었는데 우편조사 방식으로는 상당히 높은 회수율을 보여 주었다.

<표 4-2> 표본의 구성

모집단	표본집단	회수 현황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업체	'9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업체	103개 업체 (회수율 30.65%)
-	336개 업체	

3. 분석방법

본 조사분석에서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및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인식은 단순빈도분석과 분할표분석을 사용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생산개선효과와 경영개선효과로 구분하여 기업들의 응답을 단순 집계하는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확률선택모형(Probability Choice Model)중²⁶⁾ probit model을 이용하였다. 프로빗 모형은 종속변수가 이진선택형일 경우 주로 이용되는 분석방법이기 때문이다.

26)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때, 사용하는 확률선택모형중에는 프로빗 모형 외에도 선형확률 모형, 로짓모형이 있다.

제2절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전망

1. 조사대상 기업의 일반적 특성

가. 기업형태 및 업종

본 조사에 응답한 103개 기업을 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가 87개 업체(86.4%)이고, 개인기업 10개 업체(9.7%), 연구소등 기타 법인 4개(3.9%)로 주식회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응답기업의 형태

구 분	주식회사	기타법인	개인기업	계
업체수(개)	89	4	10	103
구성비(%)	86.4	3.9	9.7	100

이를 다시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의류·가죽, 목재·가구, 종이·인쇄·출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1차금속·비금속광물, 조립금속·기계장비, 전기전자·통신·정밀기기, 음식료품 업종이 각각 13.6%, 11.7%, 11.7%, 11.7%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6년 현재 충남의 광공업의 업종별 비중과 비교할 때 섬유·의류·가죽·신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 응답기업의 업종

구 분	업체수(개)	구성비(%)	충남 중소기업 구성비(%)
음식료품	12	11.7	15.9
섬유·의류·가죽·신발	4	3.9	12.5
목재·가구	1	1.0	2.1
종이·인쇄·출판	6	5.8	5.8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14	13.6	12.7
1차금속·비금속광물	12	11.7	16.4
조립금속·기계장비	12	11.7	16.5
전기전자·통신·정밀기기	12	11.7	7.5
기 타	30	29.1	10.6
계	103	100.0	100.0

나. 자본 및 종업원수

응답한 기업들의 '97년 현재 평균 자기자본은 19.58억원으로 나타난 반면 총자산은 85.56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22.9%로 나타나 전국 평균 25.3%(96년 기준)에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평균 종업원수는 71.58명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5~49인 기업체수는 58개 업체(57.4%), 50~299인 23개 업체(22.8%)로 충남 전체 중소기업의 종업원수별 업체 비중 84.7%, 15.3%와 비교할 때 소기업의 비중은 낮은 반면, 중기업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매출/연구개발비

응답 기업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78.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연구개발비 지출은 1.77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26%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율 0.34%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표 4-5> 응답 기업의 일반적 특성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최 대	최 소
자기자본 (97년, 억원)	19.58	42.59	282.2	-2.8
총자산 (97년, 억원)	85.56	121.34	893.9	2.4
종업원수(명)	71.58	79.08	568	4
매출액 (연간, 억원)	78.3	119.42	1007	0.2
연구개발비 (연간, 억원)	1.77	2.63	11	0

라. 경쟁력

응답 기업의 특허권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권을 1건도 갖지 않은 기업이 전체의 70%에 이르고 있으며 1~5건 25%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동종 기업의 상품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질문한 결과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5점(표준편차 0.9)에 그치고 있어 제품의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방화의 진전에 대응키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중요

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응답 기업의 특허권 보유 현황

구 분		0 건	1 - 5 건	6 - 10 건	10건 이상	계
특허권 보유	업체수 (개)	70	25	3	2	100
	구성비 (%)	70	25	3	2	100.0

2. 경영여건

가. 조업상태

IMF 이후 조업상태가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 기업들은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4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조업여건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가적으로 정상조업이 어려워진 이유를 질문한 결과 「판매부진 및 재고누적」이 응답 기업의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원자재 가격상승 및 채산성 악화」(24.4%), 「대출금 부담」(8.9%), 「운영자금 부족」(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로 인한 환율 및 금리인상이 기업운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4-7> 정상 조업이 어려운 이유

구 분		판매부진 및 재고누적	원자재 가격상승 및 채산성 악화	거래기업 의 부도	고금리에 따른 대출금 부담	대출애로 때문에 운영자금 부족	원자재의 적기 물량확보 곤란	기타	계
정상 조업 이 어 려 운 이 유	업체수 (개)	45	22	6	8	7	0	2	90
	구성비 (%)	50	24.4	6.7	8.9	7.8	0	2.2	100

나. 자금사정

1998년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6점(표준편차 1.0)으로 나타나 IMF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이 62.4%로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금융기관 대출중단」(9.4%), 「어음만기일장기화」(8.2%), 「어음할인 곤란」(7.1%) 등의 순으로 나타나 환란에 따른 내수시장의 부진과 현금 유동성문제가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자금사정이 악화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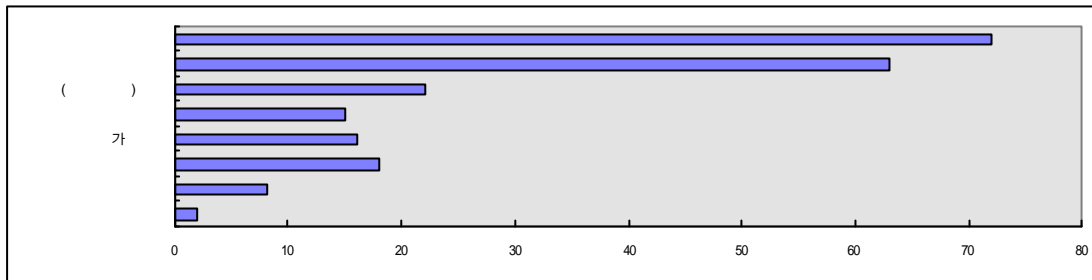
구분		판매부진 및 재고누적	금융기관 대출중단	어음할인 곤란	거래기업 부도	어음 만기일 장기화	대출연장 불가	기타	계
자금 사정 이 악화 된 이유	업체 수 (개)	53	8	6	1	7	4	6	85
	구성 비 (%)	62.4	9.4	7.1	1.2	8.2	4.7	7.1	100.0

다. 구조조정

응답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 때문에 회사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찬반이 양립하고 있으나(5점 척도 기준 2.9점), 대체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 기업체중 현재 임금동결 및 삭감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70개 업체 이상이며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계획인 기업도 60개 업체 이상으로 나타나 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력 및 임금조정에 착수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응답업체의 10%에도 미치지 않고 있어 일방적인 인력삭감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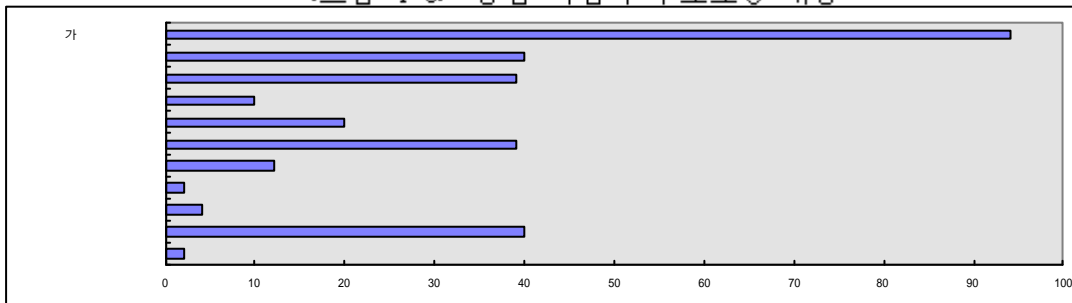
<그림 4-2> 인력 및 임금조정 계획업체의 내용



주) 단위 : 업체수(개)

응답 기업체들은 이러한 임금 및 인력조정 외에 원가나 경비절감, 신규사업 및 신제품개발, 영업활동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전략을 통해 불리해진 경영여건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응답 기업체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융자신청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수급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본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여타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기업가적 경영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4-3> 응답 기업의 구조조정 내용



주) 단위 : 업체수(개)

3. 전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답 기업들은 향후 매출전망에 대해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0점(표준편차 1.0)으로 나타나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응답치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탓도 있지만 악화된 경영여건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자하는 응답 기업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평가

1. 만족도

가. 종합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만족도는 지원의 규모, 지원의 질(절차, 비용), 지원제도의 운영방식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앞서 중소기업 경영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체들이 자금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므로 생산요소의 하나인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이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러한 기업체들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자금 지원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1점(표준편차 1.1)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1%가 정부의 자금지원 시책에 보통 또는 만족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4-9> 자금지원시책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수	비율
매우 그렇다	10	9.9
그렇다	22	21.8
보통	29	28.7
그렇지 않다	30	29.7
매우 그렇지 않다	10	9.9
계	102	100.0

나. 분야별

1) 규모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은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6점(표준편차 1.0)으로 나타나 만족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의 대상자들중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자금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충남 소재 모든 중소기업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 그리고 자금지원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8.4%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10> 지원자금 규모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수	비율
매우 그렇다	20	19.6
그렇다	23	22.5
보통	30	29.4
그렇지 않다	26	25.5
매우 그렇지 않다	3	2.9
계	102	100.0

2) 절차 및 비용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질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금지원의 적시성과 관련된 대출절차나 대출시 부대비용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5점 척도 기준으로 각각 평균 2.1점과 3.1점으로 나타나, 대출절차가 번거로운 편이지만 부대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대출절차를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고 지원자금의 활용도도 보다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1> 대출절차와 비용에 대한 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대출절차가 번거롭다	2.1	0.9
정책자금 대출시 부대비용 등 경비지출이 많은 편이다	3.1	1.0

3) 운영

한편, 대출받은 정책자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평균 1.8점), 금융지원에 따른 활용도와 효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보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

다」가 90.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적기에 차입되는 경우 기업의 생산 및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지원자금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수	비율
매우 그렇다	32	32.3
그렇다	58	58.6
보통	4	4.0
그렇지 않다	5	5.1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계	99	100.0

2. 자금지원 혜택

가. 지원회수

응답 기업의 97% 이상이 지난 5년간 1회 이상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거의 매년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이 약 3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충남의 중소제조업체 수가 약 2,700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자금지원이 편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지원자금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거나 담보 부족에 따라 자금차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표 4-14>는 20인 이하의 소기업들이 21인 이상의 중기업에 비해 지원 받은 회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 규모가 작아 신용이 좋지 않기 때문이며 이들 소기업의 자금차입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능의 강화 등 소기업의 담보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표 4-13> 정책자금의 지원회수

구분		1회	2회	3회	4회이상	없음	계
지난 5년간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회수	업체수 (개)	20	21	24	33	3	101
	구성비 (%)	19.8	20.8	23.7	32.7	3.0	100.0

<표 4-14> 업종별/규모별 지원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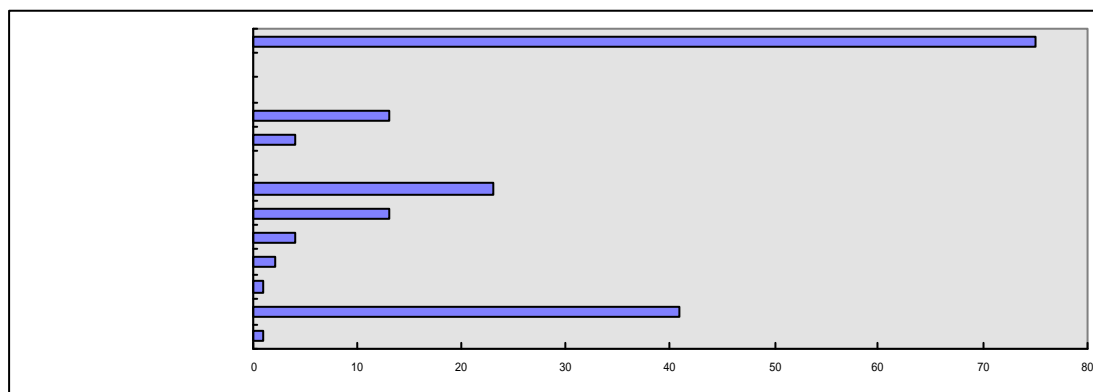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없음	계
1~20인	10(9.90)	8(7.92)	2(1.98)	0(0.00)	0(0.00)	20(19.80)
21~50인	5(4.95)	10(9.90)	5(4.95)	15(14.85)	3(2.97)	38(37.62)
51~100인	5(4.95)	1(0.99)	8(7.92)	9(8.91)	0(0.00)	23(22.77)
101~200인	0(0.00)	2(1.98)	6(5.94)	7(6.93)	0(0.00)	15(14.85)
201인 이상	0(0.00)	0(0.00)	3(2.97)	2(1.98)	0(0.00)	5(4.95)
계	20(19.80)	21(20.79)	24(23.76)	33(32.67)	3(2.97)	101(100.00)

나.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종류

응답 기업들이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종류로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시도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정보화사업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타 정책자금은 지원회수가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경우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4>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종류



주) 단위 : 업체 수(개)

다. 탈락경험/탈락후 자금조달

정책자금의 신청시 탈락경험 유무를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7%는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신청할 때마다 자금배정을 받은 기업도 31개 업체로 3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자금조달하였는지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약 70%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용자를 이용하였으며 사채를 빌려쓴 경우도 14개 업체 17.1%로 나타났으나 자기자본의 의존비율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15> 자금배정의 탈락경험

구 분		있 음	없 음	계
정책자금신청시	업체수(개)	68	31	99
탈락경험유무	구성비(%)	68.7	31.3	100.0

<표 4-16> 탈락시 자금조달방법

구 분		은행 용자	제2 금융권	회사채	사채	사내 유보금 · 증자	사업 축소	관련 대기업 지원	기타	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자금조달방법	업체수 (개)	46	11	0	14	7	3	0	1	82
	구성비 (%)	56.1	13.4	0.0	17.1	8.5	3.7	0.0	1.2	100.0

3. 지원자금의 애로요인 및 방향

가. 정책자금

현재 중소기업 지원자금 등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상의 문제점을 순위별로 제시토록 한 결과 1순위로는 신용대출 부진(담보부족), 복잡한 지원절차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순위로는 자금지원규모의 부족, 복잡한 지원절차, 단기 대출기간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3순위로는 자금지원규모의 부족, 실적위주의 평가기준, 담보 부족 등이 높은 비율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담보위주의 대출방식, 복잡한 지원절차, 부족한 지원자금 규모, 불합리한 평가기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응답 결과는 향후 중소기업 지원자금제도의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할 것이다. 즉,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활용도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담보 등 새로운 대출방식을 모색하여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금의 적시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적위주의 높은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지원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표 4-17> 정책자금 지원상의 문제점

구 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계	
	업체수 (개)	구성비 (%)	업체수 (개)	구성비 (%)	업체수 (개)	구성비 (%)	업체수 (개)	구성비 (%)
담보부족	55	55.0	5	5.2	15	16.9	75	26.4
대출기간이 단기	5	5.0	15	15.6	4	4.5	24	8.4
대출금리가 높음	4	4.0	10	10.4	12	13.5	26	9.1
실적위주 평가기준	2	2.0	10	10.4	16	18.0	28	9.8
실사 평가능력미흡	2	2.0	1	1.0	1	1.1	4	1.4
높은 평가기준	10	10.0	13	13.5	6	6.7	29	10.2
지원절차와 구비서류 복잡	14	14.0	18	18.8	10	11.2	42	14.7
자금지원 정보부족	2	2.0	4	4.2	9	10.1	15	5.3
자금지원규모부족	6	6.0	20	20.8	16	18.0	42	14.7
기 타	0	0.0	0	0.0	0	0.0	0	0.0
계	100	100.0	96	100.0	89	100.0	285	100.0

나. 은행대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기자본 조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은행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응답 기업들에게 은행대출상의 문제점을 순위별로 제시토록 한 결과 1순위로는 지나친 담보요구, 높은 대출금리가 압도적인 비율로 지적되었고, 2순위로는 담보 저평가, 높은 대출금리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3순위로는 높은 대출금리, 담보 저평가,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 높은 비율로 지적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책자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시에도 담보문제가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대출금리도 은행으로부터의 자

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4-18> 은행 대출상의 문제점

구 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계	
	업체수 (개)	구성비 (%)	업체수 (개)	구성비 (%)	업체수 (개)	구성비 (%)	업체수 (개)	구성비 (%)
담보 요구	78	77.2	12	12.4	5	5.7	95	33.3
격기 요구	1	1.0	10	10.3	5	5.7	16	5.6
높은 대출금리	18	17.8	23	23.7	23	26.4	64	22.5
낮은 대출규모	0	0.0	9	9.3	10	11.5	19	6.7
어음할인 곤란	0	0.0	3	3.1	1	1.1	4	1.4
담보 저평가	2	2.0	24	24.7	14	16.1	40	14.0
거래절차 복잡	2	2.0	8	8.2	12	13.8	22	7.7
의사결정 지연	0	0.0	7	7.2	11	12.6	18	6.3
정보 부족	0	0.0	1	1.0	2	2.3	3	1.1
물친결, 반대급부 요구	0	0.0	0	0.0	4	4.6	4	1.4
기 타	0	0.0	0	0.0	0	0.0	0	0.0
계	101	100.0	97	100.0	87	100.0	285	100.0

다. 중점지원 분야

이러한 정책자금과 일반자금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현재 가장 시급한 금융지원정책은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며(36.6%), 만기대출금 상환을 연장해 줌으로써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단기적으로라도 개선시켜야 한다(29.7%)고 응답 기업들은 밝히고 있다. 이밖에 시설자금 외에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표 4-19> 시급한 금융지원정책

구 분		만기 대출금 상환연장	신용 보증 지원 확대	운 전 자 금 지 원 확 대	시 설 자 금 지 원 확 대	어 음 할 인 확 대	무 역 금 지 원	어 음 할 인 지 원	부 도 어 음 상 환 자 제	기타	계
가장 시급한 금융 지원 정책	업체수 (개)	30	37	26	7	0	0	1	0	0	101
	구성비 (%)	29.7	36.6	25.7	6.9	0.0	0.0	1.0	0.0	0.0	100.0

한편, 정부 정책자금의 증점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1순위에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2순위도 역시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생산성 향상, 경영안정, 수출촉진 등의 순이었다.

창업 지원이 낮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이 기존업체에 한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IMF로 인한 경영여건의 악화에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일반자금에 의한 운전자금 충당이 어려운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한시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응답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구조조정자금의 지속적 운영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4-20> 증점지원이 필요한 분야

구 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계	
	업체수 (개)	구성비 (%)	업체수 (개)	구성비 (%)	업체수 (개)	구성비 (%)	업체수 (개)	구성비 (%)
창업지원	6	5.8	2	1.9	2	2.0	10	3.3
기술개발	19	18.4	21	20.4	15	15.3	55	18.1
생산성향상	23	22.3	26	25.2	22	22.4	71	23.4
신규설비투자	5	4.9	6	5.8	14	14.3	25	8.2
기술인력양성	4	3.9	8	7.8	12	12.2	24	7.9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	39	37.9	28	27.2	17	17.3	84	27.6
해외투자 및 수출촉진	5	4.9	12	11.7	16	16.3	33	10.9
기 타	2	1.9	0	0.0	0	0.0	2	0.6
계	103	100.0	103	100.0	98	100.0	304	100.0

제4절 자금지원의 효과분석

1. 정책자금의 일반적 효과

가. 종합효과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를 5점 척도에 의해 질문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평균 2.7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지원자금은 해당 기업의 매출, 고용, 수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평균 2.0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효과가 매우 크다	2.7	1.1
정책자금이 매출, 고용, 수출에 미친 영향이 크다	2.0	0.7

나. 자금지원 효과의 영향요인분석

중소기업 자금지원효과에 대한 영향요인분석이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공장만을 대상으로, 자금지원효과의 발생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분석에 이용된 변수는 제1절에서 선정한 변수들중 다중공선성에 관여되어 있는 변수를 제외한 BUS(경영경험 유무), PAT(특허권 유무), EMP(종업원수), FIN(부채비율), PRO(생산성), RAD(기술개발 투자비) 등 6개 변수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변수들로 probit 모델에 의한 분석한 결과 <표 4-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성은 0.467로 추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의미한 변수만을 가지고 영향의 방향을 살펴보면 「특허권 유무」, 「종업원수」, 「생산성」 변수의 부호는 (+)를 나타내고 있고, 「부채비율」 변수는 (-)로 나타난 반면, 「경영경험 유무」와 「기술개발 투자비」 변수는 유의미한 변수로 채택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수록, 종업원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지원자금의 지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부채비율」이 높을수

록 자금의 지원효과가 적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기업 보다는 중기업에,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그리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야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기업주의 경영경험」이나 「기술개발투자」 변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채택되지 않은 데는 과거의 경험 보다는 기업가적 정신이 사업의 성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기술개발 투자에 따른 생산 및 경영개선이 일정 기간의 기간을 거친 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표 4-22>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변수별	β 값	표준오차	$L(\beta)$: -22.925 $L(0)$: -42.975 ρ : 0.467
BUS	-0.489	0.473	
PAT	0.983**	0.466	
BMP	0.004***	0.002	
FIN	-4.782*	1.335	
PRD	0.917*	0.297	
RAD	0.006	1.007	

*: $p < 0.1$, **: $p < 0.05$, ***: $p < 0.10$

2. 부문별 효과

가. 생산제고효과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효과를 자금지원 전후의 생산, 생산능력, 매출, 수출, 부가가치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표 4-23>과 같다.

즉, 응답 기업들의 자금 지원전 월 평균 생산액은 3,879억 원이었으나 지원 후 6개월의 월 평균 생산액은 4,908억 원으로 약 21%의 생산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산능력은 지원전 월 평균 생산능력이 6,056억 원에서 지원 후 7,722억 원으로 약 21.6%의 생산능력이 제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응답 기업들이 주로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관련 구조조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들로 시설투자 및 신기술 도입으로 생산제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설투자 결과 지원 받은 후 부가가치도 월 평균 0,789억 원에서 1,102억 원으로 2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및 생산능력의 제고는 매출과 수출의 증가로 이어져 매출이 지원전 월 평균 4,267억 원이었으나 지원 후 5,103억 원으로 약 16.4%, 수출이 지원전 월 평균 1,863억 원에서 지원 후 2,030억 원으로 약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생산제고효과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생산(월평균,백만원)	지원전6개월	387.9	428.0
	지원후6개월	490.8	532.5
생산능력 (월평균,백만원)	지원전6개월	605.6	656.8
	지원후6개월	772.2	840.6
매출(월평균,백만원)	지원전6개월	426.7	375.4
	지원후6개월	510.3	452.8
수출(월평균,백만원)	지원전6개월	186.3	229.9
	지원후6개월	203.0	229.0
부가가치 (월평균,백만원)	지원전6개월	78.9	110.5
	지원후6개월	110.2	139.0

나. 경영개선효과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제공후 자동화시설 투자 및 공정의 개선으로 인력절감이나 품질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응답 기업들의 자금 지원 전 1년간 평균 종업원 수는 625명이었으나 지원 받은 후 1년간 평균 종업원 수는 56.5명으로 약 10.6%의 인력이 절감되어 연간 약 1억 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금지원 혜택을 받기 전 연간 평균 불량률은 5.1%였으나 지원 후에는 4.5%로 약 0.6% 불량률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연간 비용 절감액이 연간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기업들이 지원자금을 구조개선에 투입함으로써 경영 개선이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표 4-24>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경영개선효과

구	분	평	균	표	준	편	차
고용인력	지원전1년평균(명)	625		46.6			
	지원후1년평균(명)	56.5		42.2			
	비용절감액(연간,억원)	1.0		0.8			
불량률	지원전1년평균(%)	5.1		9.7			
	지원후1년평균(%)	4.5		12.3			
	비용절감액(연간,억원)	1.1		1.1			

제 5 절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충남소재 '97년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 기업들이 최근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조업상태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판매부진과 재고누적」 때문이며 IMF 한파가 충남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응답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지만 정리해고를 고려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답 기업들은 향후 매출전망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둘째, 정부의 자금지원시책에 대하여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잡한 자금지원절차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조사결과 응답 기업들의 약 30% 수준이 매년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수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의 편중현상이 엿보인다.

셋째, 응답 기업들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담보위주의 대출방식, 복잡한 지원절차, 부족한 지원자금 규모, 불합리한 평가기준 등을 지적하였다. 은행대출시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금융지원정책으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만기대출금 상환을 연장해 주는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자금지원효과의 영향요인분석 결과 중소기업 보다는 중기업에,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그리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야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생산 증가, 부가가치 증가 등 생산제고효과는 2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인력 절감, 불량률 감소 등 경영개선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부터 현행 자금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자금 규모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둘째, 자금배분시 효율성이 떨어지며

셋째,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넷째,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제 5 장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용개선방안

제 1 절 기본방향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현황분석과 자금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 결과 현행 자금지원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원자금 규모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중앙-지방간 매칭펀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규모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기능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과 지역자본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중소기업의 여건에 비해 자금배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다. 이 결과 신청할 때마다 지원을 받는 업체가 있는 반면 신청하여도 자금배정에서 누락되는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이 많아 자금지원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에 자금배정을 받은 중소기업중 15~20%가 부도·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에 기업의 경영상태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셋째,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절차가 복잡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지원절차는 기업의 준수비용을 증대하고 자금의 적기공급을 어렵게 함으로써 지원자금의 이용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원자금의 신청절차와 신청기준을 간소화 또는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융자시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담보를 요구하는 문제점 때문에 실제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담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은 있으나 담보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위한 융자보증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상의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제5장에서는 각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개선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금규모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능 강화, 자금배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 절차의 간소화, 융자보

증제도의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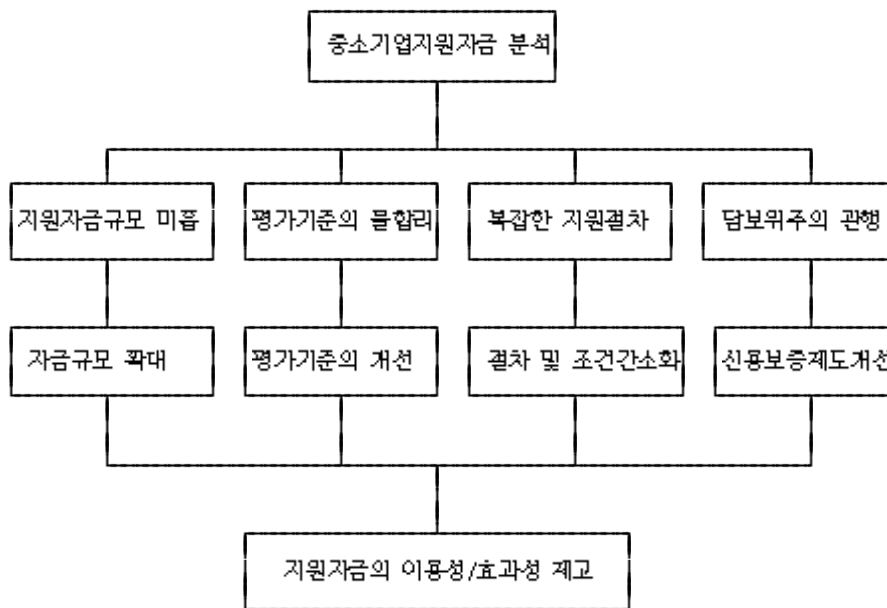
자금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가 요청되는 바, 중앙자금의 지방이양 촉진, 지역자금의 동원을 위한 지역활성화 공동투자제도(가칭)의 도입 등이 그 구체적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자금배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자의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세분화된 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무구조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보다 강화하여 지원자금의 안정적 운영기반도 강화하여야 한다.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전반적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담보위주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보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용자보증제도의 활성화나 기술보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림 5-1> 지원자금 운용개선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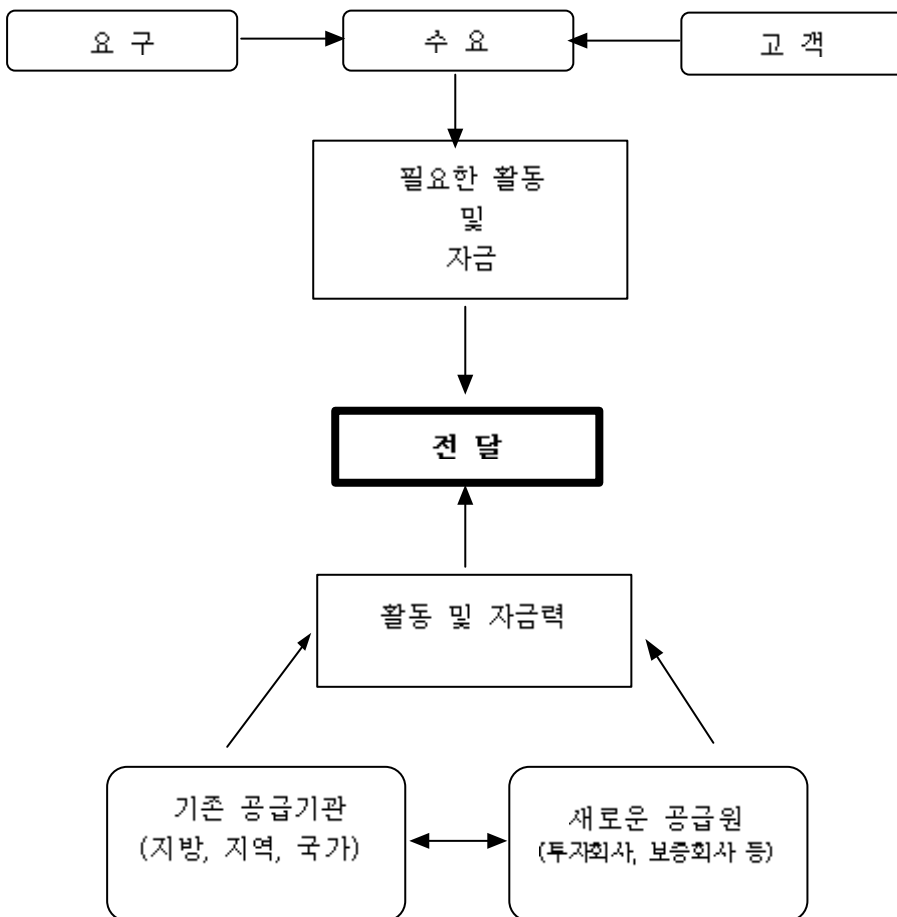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기능 강화

1.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자금의 지방이양 촉진

가. 중소기업 지원기능의 지방이양

<그림 5-2>은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고객인 지방중소기업의 수요에 근거한 중점 지원분야의 선정과 자금수요의 추정과, 기존의 자금원과 새로운 자금원으로 구성된 공급 측면의 고려가 조화될 때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시스템은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림 5-2> 지방중소기업 재정지원의 틀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체계는 이러한 맥락속에서 움직이기 보다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 지원체계 하에서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는 속에서도 재원이양이 뒤따르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며 오히려 중앙정부(통상산업부)의 외곽단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이 재정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접근성, 가시성, 문제/기회지향성, 융통성, 단순성, 관련성 등 여러 가지 지표가 고려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표 5-1> 중소기업 지원자금 전달기관의 선정기준

기 준	내 용
접근성 (Accessibility)	- 개별 중소기업체들은 정보 수집원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지원이 지방수준에서 이용가능하거나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가시성 (Visibility)	- 중소기업체의 제한된 정보탐색행태를 고려할 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보다 가시적이어야 함
문제/기회지향성 (Problem/Opportunity)	- 특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함
융통성 (Flexibility/Breadth)	-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서비스 규모가 융통적일 것
단순성(Simplicity)	- 조건이나 절차가 단순하여야 함
관련성(Relevance)	- 각 업주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특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함
비용성(Price)	- 지원이 접근가능하고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함
신뢰성 (Credibility)	- 가급적 지원은 기업들이 신뢰하는 공무원들에 의해 전달될 필요 있음
통합성 (Integration)	- 다른 기관들과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의 지원서비스가 다른 것들과 통합되어야 함

즉,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이 고객인 중소기업체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되려면 기업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고,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고, 지방기업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기관이 자금지원을 담

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준에 가장 부합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청은 시·도 자치단체로 통합되어 지방기업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이 때 지방중소기업청의 재원과 인력도 지방으로 동시에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 확대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금융 및 세제분야에서도 제한적이거나 자치단체의 권한이 신장되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수단은 그다지 많지 않으나 대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역보증보험에의 출연, 지방세 감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형식으로 기여하고 있는 액수가 1993년 약 2,308억원에서 1997년 약 5,078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94년 2,000억원에서, '96년 4,000억원, '97년 4,608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러나 정부간 분담방식(Matching Fund) 형식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비 확보에 실패하여²⁷⁾ 중소기업 자금지원상 불이익을 당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가 수요에 비해 작은 관계로 대출금리도 6~10%로 높은 수준이며 지원한도액도 낮은 편이다. 중앙정부는 현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 국비자금을 대어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대여금리도 5.5%로 외국 사례에 비추어 높은 수준이다.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자금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제4장의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운전자금의 대출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50: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조성하는 육성자금의 국비 비중을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출연방식도 현재의 자금대여방식에서 보조방식으로 전환하여 매년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7) 충남의 경우 1998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기금확보를 위한 목표액이 당초 500억원이었으나 도비확보에 실패하여 343억원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부담액도 줄어들어 결국 타 지역에 비해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했다.

2. 지역활성화 공동투자제도(가칭)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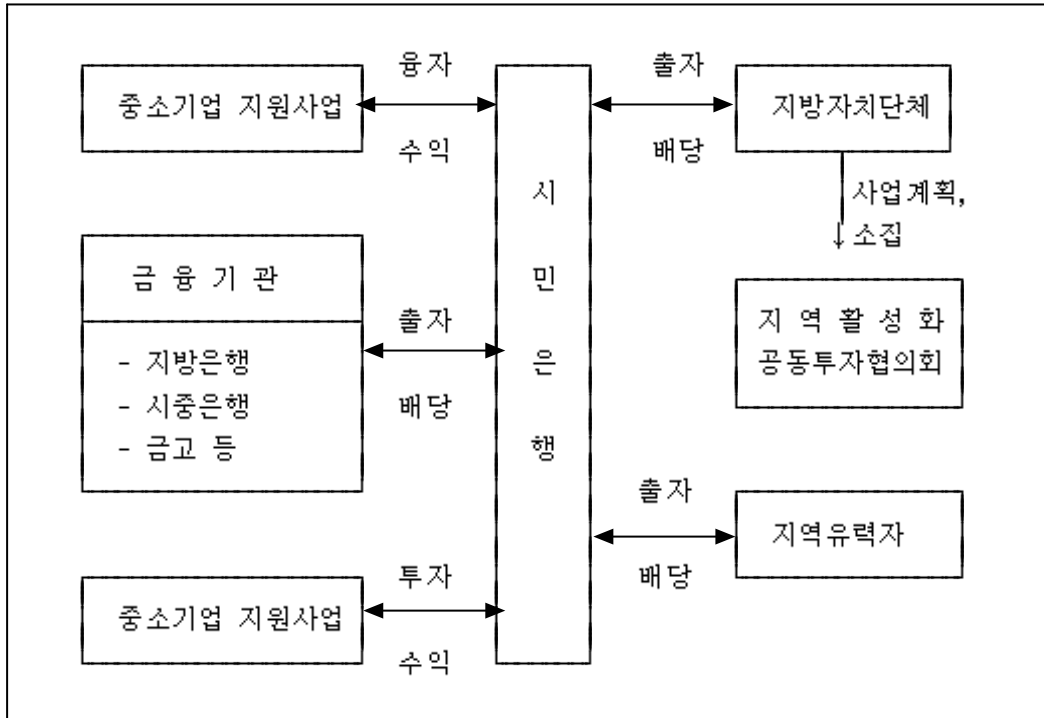
부족한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규모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지역자금의 효율적 동원체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자금은 주로 전국적 기준에 의해 재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원조건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지방의 금융기관들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공동투자제도(가칭)를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광역자치단체(시·도)가 지역활성화공동투자제도의 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금융기관(지방은행, 시중은행, 금고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일종의 「시민은행」을 설치하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지방중소기업에 융자해 주고 투자수익은 참가 기관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할 수 있다.²⁸⁾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참여기관이 함께 참가하는 「지역활성화공동투자협의회(가칭)」를 광역자치단체에 비상설기구로 두어 투자 및 융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구성은 시·도의 지역경제담당국장, 금융기관 대표 등이 참가하여 협의하도록 한다(<그림 5-3> 참조).

28) 이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의 「시민뱅크」 제도가 있다.

<그림 5-3> 지역활성화공동투자제도의 운영체계



제 3 절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배분방식 개선방안

1. 지원자금 배분방식의 기준설정

(1) 기준설정의 의의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재정재원과 금융재원을 통해 마련된다. 이러한 자금은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적정 수준의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즉, 자금은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에 지원되어야 하며, 따라서 자금수혜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자금압박이 매우 심하기는 하지만, 장래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기업에는 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는 반면, 사양산업에 속하는 기업에의 단순한 운영자금 지원은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적 목적만을 생각하고 재무상태가 매우 부실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자금의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금수혜 기회를 갖지 못한 타 기업에의 부수적 영향까지 고려할 때, 대출

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금지원을 위한 기업선정기준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기업의 첫째, 경영상황 또는 재무상태, 둘째, 정책상 목적(첨단산업의 육성 등)을 반영하는 것이 된다. 이중, 정부의 중소기업 부문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경영상황)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계속해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지원에 따른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15~20%가 5~6개월 내에 부도처리 되었다는 점은 자금지원시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금 배분방식의 개선안에 관한 본 절에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중심으로 기존 배분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배분방식 기준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2) 배분방식기준설정의 원칙

자금지원 결정 시 기업의 속성을 적절히 나타내기 위한 기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첫째, 기준은 되도록 기업경영 및 정책목적에 반영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즉 기준은 지표 내지 지수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정부(지방정부)의 자금지원은 공적 자금의 투자인 만큼, 지원결정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결정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되도록 줄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객관적 평가지표는 기업에 관한 자료의 축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실적합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기업에 관한 사항을 모두 지표화 내지 수치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자의적 평가가 많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가능해져 단순 수치를 통한 기업 평가보다 질적 평가를 오히려 수행할 여지는 많겠으나, 복잡한 기업경영에 대해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인사이드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점은 경험축적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제약하며 자료의 축적에도 문제점을 낳게 한다.

둘째,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표는 반복측정의 경우에도 같은 결

과를 나타내야 하며, 기업의 경영상태와 장래성 등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셋째, 적절한 수준의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금지원은 시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표를 수치화하고 이를 해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기업상태에 대한 지나친 세부적 지표화는 오히려 신청기업에 큰 부담을 주거나 행정상의 비용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지표를 선정할 때에는 되도록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며, 지나친 세부 항목화보다는 본질적인 몇 가지의 지표로 적정히 내용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기존 기업체평가방식의 문제점 검토

이번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 기업평가에 대한 사례로서 충청남도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신청업체 평가기준(기존업체)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 구체적 종합평가표는 다음 <표 5-2>와 같다.

<표 5-2> 충청남도 구조조정자금 신청기업체 종합평가표(기존)

평 가 항 목		배 점	점 수
	대 항 목		
합 계		110	
I. 재무상태(50점)	1. 자기자본비율	10	
	2. 매출액증가율	10	
	3. 부채비율	10	
	4. 매출액영업이익률	10	
	5. 금융비용/매출액	10	
II. 기술성(10)	6. 기술개발실적	5	
	7. 기술수준	5	
III. 경영능력(10)	8. 품질인증	5	
	9. 기술인력 보유도	5	
IV. 사업전망(20)	10. 첨단산업 여부	5	
	11. 기업정착도	5	
	12. 사업추진효과	10	
V. 국민경제적 효과(10)	13. 지역경제기여도	5	
	14. 수출기여도	5	
VI. 가점(최대 10)	15. 경영기술인정	10	
	16. 시책참여	10	
	17. 수상등기타	10	

기준 각각의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무상태

종합평가표에 따르면, 충청남도 구조조정자금 지원기업평가지 기업의 재무상태는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금융비용/매출액의 5개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5-3>과 같다.

<표 5-3> 재무상태 측정기준(기준)

구 분	적 용 방 법	평 가 방 법
자기자본비율	$(\text{자기자본} / \text{총자본})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비율 50%이상(10점) · 자기자본비율 30%이상(8점) · 자기자본비율 20%이상(6점) · 자기자본비율 10%이상(4점) · 자기자본비율 10%미만(2점)
부채비율	$(\text{부채총계} / \text{총자본})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50%미만(10점) · 부채비율 80%미만(8점) · 부채비율 100%미만(6점) · 부채비율 200%미만(4점) · 부채비율 200%이상(2점)
매출액증가율	$\frac{[(\text{당기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매출액증가율 100%이상(10점) · 연간매출액증가율 50%이상(8점) · 연간매출액증가율 30%이상(6점) · 연간매출액증가율 10%이상(4점) · 연간매출액증가율 10%미만(2점)
매출액영업이익률	$(\text{영업이익} / \text{매출액})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이익률 40%이상(10점) · 영업이익률 30%이상(8점) · 영업이익률 20%이상(6점) · 영업이익률 10%이상(4점) · 영업이익률 10%미만(2점)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text{금융비용} / \text{매출액})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비용 2%미만(10점) · 금융비용 4%미만(8점) · 금융비용 8%미만(6점) · 금융비용 10%미만(4점) · 금융비용 10%이상(2점)

위의 항목을 분석해보면, 각각의 지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중 안정성비율, 성장성비율,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수익성비율을 나타내는 항목들이다. 이중 안정성비율이란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성장성비율이란 일정 시점동안 기업의 규모와 경영성과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또한 수익성이란 기업이 조달된 재원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했는 지를 나타내며 기업의 총괄적인 경영성과와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비율은 안정성비율, 성장성비율,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생산성비율로 분류된다(권준정, 1999). 이러한 비율의 분류와 각각의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위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민간부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준표(일반사채적격기준표, 단기금융회사공통적용기업체평가표 등)(권준정, 1999)에서 나타나는 활동성비율이 없다는 점이다. 이 활동성비율이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총자산회전율(기업에 투자된 총자산의 운용효율측정), 매출채권회전율(매출채권의 현금화속도측정), 재고자산회전율(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변화되는 속도측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특히 어음이 중소기업의 주요 거래결제수단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과대한 매출채권이 오히려 기업재무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기변동에 따라서는 악성채권화할 수 있으므로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정도는 주요 재무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진부화된 재고의 규모를 나타내는 재고자산회전율 역시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산성 비율이란 기업활동의 능률성과 경영성과 및 성과배분과정을 측정하는 지표로, 경영합리화의 척도로 사용되는 주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평가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생산성 비율에는 부가가치율,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등이 있는데, 이중 공적 자금의 투자효율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자본생산성(총자본투자효율)과 기업 종사자의 생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안정성비율을 볼 때,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만으로는 기업의 단기 부채상환 능력을 파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금지원 시 해당 기업의 사업영위가 어느 정도 지속될 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안정성비율 중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유동비율이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의 과다로 인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데 비해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보정해 줄 수 있는 지표로서 당좌비율을 유동비율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 적절한 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은 기업의 부채부담 정도를 각각 자산에 대한 부채와 자본비율로 측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지표를 중복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수익성비율에서 매출액영업 이익율은 매출액경상이익율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이자수익, 외환차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잡이익 등)을 포함하고 영업외비용(이자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외환차손, 잡손실 등)을 차감한 이익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실적 등을 고려할 때, 기업 이익에서 외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적정히 반영한 수익성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재무비율분석시 평가방법의 문제이다. 위의 표에는 평가방법이 기업이 속한 업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각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등은 업종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실제 경영도 서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업 경영자나 기업 문화에 따라서는 각각의 기업경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으로는 기업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의 평가기준과는 달리 보다 완화된 형태의 평가가 필요하다. 즉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과 각 기업의 경영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산업표준비율의 도입과 배점의 완화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점은 정책목적상 다른 항목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재무분석의 경우 특정 기업의 재무비율이 산업표준비율에 따른 업종평균보다 건전한 경우에는 10점을, 평균과 같거나 ±50%의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5점을, 그 밖의 경우에는 0점을 배점하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여섯째, 재무제표분석은 당기 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기업의 경영상태가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자금지원을 위한 조사시점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상태가 어떠한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단기지급능력을 분석함으로써 알아볼 수 있다(기술신용보증기금,1999).

<표 5-4> 단기지급능력분석표

구 분		조사기준일 현재 잔액
미결제어음	지급어음 기타어음(공사대금, 기계구입자금 등 일반적 상거래이외의 발행어음)	
	A	
상환재원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B	
비교(B - A)		

단기지급능력분석 결과 미결제어음이 상환재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배점 상으로는 0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5점을 배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기업의 경영여건은 기업 자체의 현재 경영과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미래에 기업의 재무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의 기준표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해당기업의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이 당기 순손실, 자본잠식, 도산 등 부실기업이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경영상황의 변화가 재무제표의 기증에 발생한 경우에는 재무비율분석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따로 분석항목을 만들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여부에 따라 5점 또는 0점을 배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최근 6개월 내지 3개월이내 덤핑, 투매 등에 의한 출혈매출이 있는가의 여부, 안정적인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가의 여부 등도 주요한 기업분석의 항목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각각 배점을 5점 또는 0점으로 한다.

신용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데, 이는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금융기관등의 연체대출금 보유여부,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1년이내 당좌부도발생,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파악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배점을 3점 또는 0점으로 한다.

(2) 기술성

기술성에 관한 구체적 항목은 <표 5-5>와 같다. 여기에는 기술개발실적을 산업재산권보유도, 기술수준을 기술인증도를 통해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의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기준으로 생각된다.

<표 5-5> 기술성 평가표(기준)

구 분	적 용 방 법	평 가 방 법
기술개발실적	산업재산권보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획득(5점) · 실용신안권획득(4점) · 의장등록권획득(3점) · 산업재산권출원(1점)
기술인증도	기술인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기술, 신기술지정기업(5점) · 벤처기업인증기업(4점) · 유망중소기업(3점) · 연구소설치운용기업(1점)

(3) 경영능력

충청남도의 기업평가표에 따르면, 자금지원의 평가기준으로 경영능력은 <표 5-6>과 같이 평가된다.

<표 5-6> 경영능력 평가표(기준)

구 분	적 용 방 법	평 가 방 법
품질인증	품질인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외 UL, JIS 등 국제규격획득 및 품질관리 1등급 업체(5점) · 품질관리 2등급업체(4점) · 검, Q마크 등 기타품질인증기업(3점) · 전, 열 등 형식승인기업(1점)
기술인력보유도	자격증소지자확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기능장, 박사1명당(5점) · 기사1급 1명당(4점) · 기사2급 1명당(3점) · 기능사, 기능사보 1명당(1점)

경영능력 평가표에서 보면, 기술인력 보유도는 기업의 기술성과 관련있는 항목으로 경영능력에서 삭제하고, 이를 기술성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기존 평가표에는 가점부여 대상으로 경영기술인정 항목을 두고 있는데, 이 항목 중 내용상 경영능력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경영능력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에서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한 자금추천기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NT마크 또는 EM마크 인증을 받은 기업, ·100 ppm품질혁신 표본인증 또는 달성기업, ·세계일류화사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산학관지역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부품소재공용화사업 참여기업), 유망선진기술지정기업, 기술지도우수기업, 공장혁신 선도기업 인증기업, ISO 인증기업 또는 ISO 인증 신청기업 항목을 기존 평가표의 경영능력란에 포함시키되, 배점은 기존과 같이 각 항목당 1점이며 최고 5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사업전망

사업전망에 관한 평가표는 다음 <표 5-7>과 같다.

<표 5-7> 사업전망 평가기준(기존)

구 분	적 용 방 법(검토항목)	평 가 방 법
첨단산업여부	중점지원업종여부	· 사무,전기,열상,의료,자동차(5점) · 1차금속,조립금속,기계장비(4점) · 비금속광물,석유,화학물(3점) · 섬유,의류,가죽,신발(2점) · 음식료업(1점)
기업정착도	기업형태 사업영위 기간 소유형태	· 기업형태 : 법인(2점) 개인(1점) · 사업영위기간 : 10년이상(2점) 5년이상(1점) · 소유형태 : 자기소유(1점) 임차(0점)
사업추진효과	· 이력절감효과 · 생산성향상효과 · 품질향상효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생산 및 판매계획의 적정성 · 자금조달계획 · 추진일정의 적정성 · 경영자의 사업추진의지 · 시장성 (고정납품처 등 고려) · 대외경쟁력 확보 (상품가격및 거래조건 등)	높은 경우 각 1점, 낮은 경우 각 0.5점

사업전망 평가기준표를 보면 첫째,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인 첨단산업을 특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정의가 기술수준이나 제품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제품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섬유제품이라 하더라도 기능성 첨단섬유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따라서 첨단산업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말고, 제품별로 특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연구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첨단산업을 참고로 할 수 있다(산업연구원, 1994)²⁹⁾. 이때 해당 업종 중 첨단산업제품생산기업은 5점을, 음료업종 기업은 1점을, 기타업종은 3점을 배점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사업추진효과에서는 평가를 시행하는 경영직 및 기술직 공무원이 모든 업종에 걸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재량권의 행사가 합리적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추진효과의 배점이 10점으로 판단근거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과 비교할 때, 비중이 너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업추진효과평가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5) 국민경제적 효과

자금지원 신청업체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은 다음 <표 5-8>과 같다.

<표 5-8> 국민경제적 효과 평가기준(기준)

구 분	적 용 방 법	평 가 방 법
지역경제기여도	지방세납부 실적	· 지방세 15만원 이상납부(5점) · 지방세 10만원 이상납부(4점) · 지방세 5만원 이상 납부(3점) · 지방세 5만원미만 납부(1점)
수출기여도	연간수출액 기준	·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5점) · 연간 수출액 30만불 이상(4점) · 연간 수출액 10만불 이상(3점) · 연간 수출액 10만불 미만(1점)

29) 여기에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첨단전자정보, 반도체·LCD),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산업, 광산업, 첨단섬유, 항공기, 자동차(첨단) 산업이 포함된다.

이 항목은 특히 정부(지방정부)의 정책적 목적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 평가기준이다. 한 기업이 소재 지방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는 지방재정 측면과 지방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지방경제적 측면은 지역고용인원, 지방 소재 기업과의 연계성(전·후방효과 등), 첨단성에 따른 지방산업의 구조고도화 기여 등, 기업선정시 쉽게 개별기업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전·후방효과나 지역경제의 고도화 등은 이미 업종의 첨단성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므로, 재정측면을 지역 기여도의 구체적 평가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6) 가점부여 대상

가점부여대상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경영기술인정 항목과 정부시책참여(중소기업 육성시책(창업스쿨, 기업인아카데미)참여기업,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기업, 사업장내 탁아시설을 설치한 기업, 지역특화사업에 참여한 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최근 2년 이내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참여한 기업), 수상 등 기타(중소기업 육성관련 도지사상 이상 수상업체,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되었거나 해제예정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기업과 수급기업협회의 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대기업이 연대보증하는 기업, 20인 이하의 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여성경제인 기업)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합계가 10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기업의 실질적 경영능력을 평가하거나 사회 정책적 목적상 필요한 항목(여성기업인에 대한 배점, 탁아시설설치기업에 대한 배점 등)외에도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기업들이 순응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항목(중소기업육성시책참여기업,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기업 등에 배점)도 포함되어 있다.

3. 개선방안에 따른 수정점검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항목은 <표 5-9>와 같다.

<표 5-9> 기업 재무상태평가 기준표(수정)

구 분	평 가 방 법	배 점	비 고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산업표준비율에 따른 업종평균보다 건전한 경우:10점, 평균과 같거나 ±50%인경우:5점, 그 밖의 경우:0점	신설
당좌비율	(당좌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액/재고자산)×100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매출채권)×100		
자본생산성	(부가가치/총자본)×100		
노동생산성	(부가가치/종업원수)×100		
매출액 대비 금융비율	(금융비용/매출액)×100		유지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 매출액]×100		
매출액경상이익률	(경상이익/매출액)×100		
단기지급능력분석	상환채원(받을어음+외상매출금)-미결제어 음(지급어음+기타어음)	(+) : 5점 (-) : 0점	신설
경영여건변화	관계 주력기업의 부실화	각각 여부에 따라 5점 또는 0점	
	최근 6-3개월 내의 출혈매출여부		
	안정적 고정거래처 확보 여부		
신용상태	·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금융기관등의 연체대출금보유여부,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1년이내 당좌부도발생, 신용물량거래처로 규제된 여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를 받았는지의 여부	각각 여부에 따라 1점 또는 0점	

위 표를 보면, 기존 점검표와는 달리 기업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을 포함시켰고, 활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을, 생산성에 대해서는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을, 수익성에 대해서는 매출액대비금융비율, 매출액증가율, 매출액경상이익률을 포함시켰다. 또한 단기지급능력, 경영여건변화,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항목도 포함시켜 기업 경영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5-10> 기술성 평가표(수정)

구 분	적 용 방 법	평 가 방 법
기술개발실적	산업재산권보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획득(5점) · 실용신안권획득(4점) · 의장등록권획득(3점) · 산업재산권출원(1점)
기술인증도	기술인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기술, 신기술지정기업(5점) · 벤처기업인증기업(4점) · 유망중소기업(3점) · 연구소설치운용기업(1점)
기술인력보유도	자격증 소지자 확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기능장,박사 1명당(5점) · 기사1급 1명당(4점) · 기사2급 1명당(3점) · 기능사,기능사보 1명당(1점)

위 표를 보면, 기술인력보유도를 경영능력 평가항목에서 기술성 평가항목으로 이전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업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표 5-11>과 같다.

<표 5-11> 기업 경영능력 평가기준표(수정)

구 분	적 용 방 법	평 가 방 법
품질인증	품질인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외 UL, JIS 등 국제규격획득 및 품질관리 1등급 업체(5점) · 품질관리 2등급 업체(4점) · NT마크, Q마크 등 기타품질인증기업(3점) · 전, 열 등 형식승인기업(1점)
기술 경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에서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한 자금추천기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 NT마크 또는 EM마크 인증을 받은 기업 · 100 ppm 품질혁신 표본인증 또는 달성기업 · 세계일류회사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 산학관지역컨소시엄사업참여기업 · 노년기반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유망중소재공공회사업 참여기업) -유망중소기술지정기업 -기술지도우수기업 -공장혁신 선도기업 인증기업 -ISO 인증기업 또는 ISO인증 신청기업 * 배점 : 각항목당 1점씩 최고 5점

위 표를 보면, 기술인력 보유도는 기존 항목에서 제외하고, 가점부여 대상평가항목에서 기술경영능력부분을 기업 경영능력 평가항목으로 이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업전망에 대한 평가는 <표 5-12>과 같다.

<표 5-12> 기업 사업전망 평가기준표(수정)

구 분	적 용 방 법	평 가 방 법
첨단산업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첨단 전자정보, 반도체 · LCD) · 메카트로닉스 · 신소재 · 정밀화학 · 생물산업 · 광산업 · 첨단섬유 · 항공기 · 자동차(첨단) 	첨단업종은 5점, 기타업종 3점, 음식료업 1점
기업정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형태 사업영위기간 소유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형태 : 법인(2점) 개인(1점) · 사업영위기간 : 10년 이상(2점) 5년 이상(1점) · 소유형태 : 자기소유(1점) 임차(0점)
사업추진효과	삭 제	

위 표를 보면, 기존 항목표와는 달리 첨단산업에 대한 기준을 보다 세밀화·엄밀화 하였으며,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사업추진효과항목은 삭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국민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현재대로 유지한다.

여섯째, 가점부여 대상은 경영기술인정 항목이 경영능력평가 항목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책참여 및 수상 등 기타 항목도 그대로 유지한다.

4. 개선방안의 한계점

위의 개선방안은 지방공무원이 현행 체제에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표로서 제안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이 미래에도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 대출금의 회수는 가능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 기업의 재무외적 상태를 파악하여 기업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 마지막으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

을 갖고 있다.

(1) 평가기준의 내재적 한계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상의 기업평가표는 기업의 실체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항목중에서도 특히 객관적으로 수치화가 가능한 것만을 선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재무분석에 관해 다음의 한계점이 있다(권준정,1999).

첫째,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인 재무비율 등은 기업의 질적 능력 즉, 기업의 신용도, 설비나 기술수준의 우열, 조직의 효율성, 경영자의 리더십, 종업원의 기술수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재무분석만으로 기업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의 재무상태는 업종에 따라서 혹은 개별 기업의 문화나 경영자의 특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재무비율, 배점만을 통해서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 경영분석을 행할 수 없다.

셋째, 비율분석에서 기업간 비교기준으로 제시한 산업표준비율은 업종평균치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업종의 전반적 경향을 나타낼 뿐이며, 반드시 업종 특유의 바람직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넷째, 경영분석은 기업의 미래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것인데, 비율분석은 과거의 회계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자료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다섯째, 재무제표는 당기말을 시점으로 작성되므로, 기중의 기업경영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

(2)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기준의 내재적 한계 외에, 이러한 기준표를 이용하여 기업을 분석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문제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담당 공무원들은 인사발령 등으로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을 갖기가 쉽지 않으며, 기업평가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민간부문의 금융관련 기관들과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간부문의 기업평가관련 전문가들은 여러 기업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의 경영분석에 이용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몇 개의 단일 분석치로 기업을 평가

하기 보다는 여러 정보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기업의 신용도를 분석한다. 또한 계속해서 기업관련 정보를 환류시킴으로써 자신들이 기업평가에 사용했던 기준을 실제에 부합하도록 수정한다(권준정,1999).

따라서, 이러한 내재적 한계와 공무원 전문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평가의 경우 이들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기업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신용보증조합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업무수행상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해당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면, 기업 실제에 보다 가까운 기업평가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기업평가를 기초로 정책 목적상 필요한 평가기준만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기업선정이 가능할 것이다.

제4절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용체제의 개선

1. 중소기업 자금지원체제의 정비

복잡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제도를 통합, 정비하여 중소기업들이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단순한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중소기업금융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먼저 재정자금대출, 금융자금대출, 중소기업금융 전담은행대출, 개발기관대출, 비은행금융기관대출, 창업지원제도 등 복잡다기하게 구성되어 있는 현행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자금용도별, 지원기관별, 지원목적에 따라 재정비함으로써 금융지원 수단간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제한된 지원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예컨대 통상산업부가 직접 관리, 운용하는 산업기반자금은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및 환경개선지원자금 등에 통폐합하여 운용하며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이 사실상 중복되는 자치단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도 이용의 편의와 자금운용의 합리성을 위해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조성이 동일하고 보증대상이 일부 중복되어 있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적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운용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금의 재정비와 함께 지원자금의 취급기관도 가급적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창구를 단일화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자금용도, 금리수준 및 용자기간 등 용자대상과 조건면에서 일관된 체계가 없기 때문에 특정자금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금융기관에 가서 어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련된 복수의 기관과 접촉해야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절차와 구비서류도 그만큼 복잡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자치단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자금지원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보다 바람직한 조치가 될 것이다.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확대 및 우대조치 강화

최근 들어 중소기업관련 지원자금의 종류와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나 아직도 일본의 그것에 비하면 지원규모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재정자금에서 충당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창업지원, 기술개발, 구조개선 등 투자의 위험이 높고 자금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용되는 투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과감히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금융기관들이 금융자금에서 정책지원하는 정책금융의 부담을 줄 수 있어 상업금융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신용에 바탕을 둔 중소기업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채 발행 또는 정부보유 공기업주식의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국공채 발행의 경우 채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해온 저금리의 강제할당방식을 지양하고 경쟁입찰방식을 확대하면서 발행금리를 시장실세금리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단의 조치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한시적인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만큼 간접적, 선별적 부과방식에 따라 특정 분야(예컨대 고급사치성 사업, 고급레저사업, 사형성사업 등)에 부과할 경우 조세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목적세의 신설은 타 분야에서도 요구가 많은 사항

이기 때문에 정책목표간 형평성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자금의 비중을 높이는 우대조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영세성과 입지의 열악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가 심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자금과 지방자금의 매칭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자금부담 배분방식을 개선하여 지방의 우대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수도권지역, 일반지역, 낙후지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부연계비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차등비율은 그리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재정형편이 좋은 시도가 정부의 재정자금을 더욱 많이 받고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자금확보가 지난하여 자금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는 현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일부 시도에서는 기채를 통해 재정자금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어렵거나 지역경제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부대 지방간 재정분담비율을 70 : 30 수준으로 상향, 재조정하여 낙후지역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무대출은 「금융기관여신운용기준」 제2조에 의거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별로 차등화되어 있으나 지역별로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적용받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의 의무대출비율이 45%의 획일적 비율에 따라 적용하고 있어 대도시 인접지역의 기업집중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시중은행의 낙후지역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에서 조달된 지역 내 자금이 서울 등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내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담보대출 5억원, 신용대출 5천만 ~1억원 수준으로 되어 있는 은행 지점장의 여신전결권을 강화하여 최소한 지역본부장 수준으로 전결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금지원절차 및 구비서류의 간소화

은행의 융자절차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융자절차 간소화 작업으로 상당부분 간소화되었으나 아직도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융자사건 신용조사에서부터 대출금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또한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융자심사, 담보감정, 저당설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의 발표로는 자금의 종류,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문전자금의 경우에는 9 ~ 13일 정도가 소요되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12 ~ 16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소요될 것으로 추측된다.³⁰⁾ 따라서 중소기업이 자금이 필요한 적기에 자금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거나 유사 중복된 절차를 축소하여 대출소요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또한 대출관련 징구서류도 꼭 필요한 서류로 대폭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는 단일화된 민원창구에서 One-Stop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대출절차 및 은행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융자관련서류를 융자신청서와 융자실행서의 2단계로 구분, 징구하고 있으며 융자신청서에는 감정서류, 신용조사서류 및 차입신청서류를 징구하고 융자실행서에는 채권보전서류를 징구하는데 모두해서 수십가지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창구에서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적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4.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 관한 정보체제 확립

현행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는 종류가 헤아리기 곤란할 정도로 많아 복잡할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원대상, 대출조건, 신청절차, 신청기관 등이 다양하여 금융기관의 창구 담당자조차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할 지경이다. 따라서 영세 중소기업으로서는 정보력의 부족으로 어떤 자금을 언제 어느 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잘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정책자금을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급히 각종 정책자금의 체계적인 심사와 관리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통

30)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금융이용 길잡이」, 1998, 10 참조.

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상세한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이를 중앙 단위의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해당 중소기업들이 관련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업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절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활성화

1. 신용심사기준의 표준화 및 심사기법의 전문화

현행 신용대출 취급기준은 각 은행별 직무전결규정상 중소기업 대출이나 가계대출 등 특정 대출과목에 국한하여 직위별 등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정도여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나 절차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실제 적용될 때는 본점의 사전양해나 문의확인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서 적기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보완책이 요구된다.

첫째, 각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 사업성, 채권회수가능성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신용평가기법을 마련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신용부담을 사전에 낮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신용심사기준을 표준화, 객관화함으로써 대출 담당 직원이 신용대출에 따른 심적 부담을 갖지 않고 적기에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신용평가기준을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정량분석외에 비정량분석(질적 요소)을 강화하여 신용대출의 여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자산 총액에 따라 평가기준을 5종류로 차등화하고 있으나 여기에 부가해서 비재무항목의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소기업 경영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종전의 기업체 종합평가표에 비해 사업성, 거래신뢰도, 경영자의 능력 등 대상기업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비재무항목의 평가비중을 크게 높임으로써 질적 특성에 맞는 주관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별로 기업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대출심사역 제도를 활성화하여 이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신용심사를 지양하고 심사역에게 실질적인 여신 의사결정권한과책임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환하여야 한다.

2. 신용대출관련 면책기준의 강화

본질적으로 자금대출이 물적 담보위주로 관행화 되는데는 대출취급에 대한 문책

및 면책 등의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상 자본금이 취약하고 경영의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소기업은 설립기간이 짧고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유정보(proprietary information)가 많기 때문에 보증기관이 신용도를 확인하고 사후적 감독을 하는데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정종락, 1997, p. 36). 따라서 대출담당자가 아무리 철저하게 신용조사와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을 해도 부도가 날 수 있으며 그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 상환능력이나 신용분석을 소홀히 해도 담보만 확보되어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담당자로서는 담보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기 쉽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기업의 신용, 상환능력, 장래성 등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신용대출을 한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도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내규에 면책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각 금융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신용평가표를 만들고 중소기업 신용평가표에 의한 신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신을 신용으로 취급토록 하며 이 사안에 대해 발생한 부도는 형사상 면책뿐 아니라 기관내 인사고과상 면책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하였거나 대출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거래은행 기능의 강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주거래은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은행과 기업간의 관계를 강화하여 은행이 단순히 자금 조달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제반 노력을 지원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상장기업이 아닐 뿐 아니라 일반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정 지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경영정보의 입수나 감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신용대출에 따른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은행은 중소기업의 기업정보나 운영상태 및 장래전망 등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신용대출에 따른 대출금의 부실화나 자금의 유용 등

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반면에 중소기업은 운전자금의 조달이나 일시적 자금 경색시에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4.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의 확대

현재와 같은 담보대출관행을 개선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신용보증기금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재산의 확대와 정부의 역할증대가 필수적이다. 이는 보증의 본질적 성격상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실제로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가 사실상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주체가 되고 있다.

신용보증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재산은 보증채무에 대한 일차적인 이행담보일 뿐 아니라 총 보증한도의 운용기준이 되므로 기금이 공신력을 갖고 신용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는 기본재산의 확충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자원부족으로 기금의 보증여력이 점차 고갈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재원을 추가로 확충하여 신규 보증여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어도 우선 출연금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출연의 규모를 금융기관수준인 50%까지 확대하고 점차 정부출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동시에 출연금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제2금융권의 출연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담보용자 도입

기술담보제도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기업에게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써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적재산권담보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강신규, 1996, PP. 11-24), 우리 나라도 일부은행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투자패턴도 부동산시설을 포함하는 고정자산위주에서 기술개발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창조적이며 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아직도 물적담보위주의 금융대출이 뿌리깊게 관행화되어 있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담보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담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리확보가 용이해야 하고 담보기술을 처분할 수 있는 유통시장이 존재해야 하며 대출금상환에 충족할 만큼의 청산가치를 지녀야 한다.³¹⁾ 따라서 기술담보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담보의 대출관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기술력평가 기법개발과 기술담보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이는 현재 여건으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각 금융기관에서는 단계별로 점진적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13> 기술담보제도의 단계별 도입방안

구분	제1 단계 (시범단계)	제2단계 (예비단계)	제3단계 (본단계)
계획기간	1997~1998	1999~2000	2001이후
전략목표	시범실시를 통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준비	시행착오 수정 및 본격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기술담보제도의 확고한 정착 및 연계기능 확충
담보평가기구	기술담보평가센터	기술평가감정원 및 지방조직	좌동 및 민간경쟁체제
담보대상기술	지적재산권, S/W기술, 일부 제품화기술	담보대상기술의 확대	기술중심의 영업담보로 확대·도입
금융기관지원	정부자금취급 금융기관	일반은행 및 종금사, 창투사 등으로 확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지원대상자금	산업기술자금 등	다 정부재정자금 및 일부 민간자금	정부 및 민간자금
손실보전방법	기술담보·보험기금 설정	기술담보기금으로 분리	손실보전의 점진적 축소·폐지 지향

출처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기술담보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1996. 6. 3

6. 지역단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확대

우리 나라와 같이 담보대출이 관행화 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접근이 매

31) 기술담보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 책을 참조. 정종락,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능력담보 융자제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경제연구총서 301권, 1997, pp. 72-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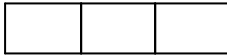
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용대출관행이 정착할 때까지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잠식으로 신용보증의 확대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기존 신용보증기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신용보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 경남, 광주 등 7개 시·도에서 설립, 운용중인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여타지역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존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출연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융기관, 지역소재 대기업 등의 출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산업이 취약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조기설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출연이나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신규, 「기술담보제도의 도입여건」, 한일경제연구소, 1996, 11
- 강인규,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기술담보제도 도입과 향후 과제」, 한일경제연구소, 1996
- 경기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실태 설문조사」, 1995, 12
- 고성수,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의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6, 10
- 권준정, 「회계원리」, 삼영사, 1999
- 김만제, 「신한국의 장래는 중소기업육성에 달려있다」, 형림, 1993
- 김선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유치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62권, 1993, 2
- 김성태 외, 「충북 중소기업의 경영현실 및 경영성과 분석」, 충북개발연구원, 1996
- 김은자,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요인」, 한국경제연구원, 1996
- 김준경, 「자본자유화시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기술보증월보」, 기술신용보증기금, 1995, 3
- 김청성, 「중소기업금융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시사금융」, 1995, 3
- 남주하, 이수희, 김명정, 「중소기업 부도현황과 대책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96
- 박동규, 「기술담보제도 도입방안」, 산업기술정책연구소, 1996
- 박삼욱,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정책과 산업단지 개발방향」,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입지센터, 1998, 5
- 박상범, 「중소기업론」, 삼영사, 1996
- 백낙기 외,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활용실태와 효과분석」, 산업연구원, 1992
- 성광원, 「중소기업론」, 형법사, 1996
- 성소미외, 「산업지원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95
- 양남하, 「건전 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상, 하), 「금융」, 전국은행연합회, 1995, 7
- 어윤배, 「전문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신용담보제도의 재정립」, 대한상공회의소, 1995
- 유한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대책」, 「시사금융」, 1995, 3
- 윤호영, 「신용대출 활성화에 관한 소고」, 「주택금융」, 1991, 9
- 이계식의, 「지방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합리화방안」, 1997
- 이수호, 「은행의 중소기업금융 실태와 효율화방안」, 「부은경제」, 부은경영정보연구소, 1996, 5~6
- 장상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방안」,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재경부·KDI국민경제교육연구소, 「알기쉬운 중소기업지원제도」, 1996

- 정건용, "우리나라 신용대출 확대방안", 「신용관리」, 신용관리기금, 1994
- 정종락,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능력담보 용자제도」, 대한상공회의소, 1997
- 제43회정책토론회, 「중소기업금융제도 개편방향」,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1998, 11
- 조덕희, "중소기업금융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보증월보」 제43호, 신용보증기금, 1995
- 조석환,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금융정책 세미나」, 1995, 5
- 중소기업연구원·독일아데나워재단, 「금융자유화와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 개편방향」, 1998, 11
- 중소기업은행, 「한국의 중소기업」, 1997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1996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통계」, 1999, 2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금융애로실태분석」, 1994, 12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대한상공회의소, 1998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9년도 중소기업금융안내」, 1999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현황」, 1998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경영실태 및 동향」, 1998, 5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동화추진현황과 구조개선사업지원 성과분석」, 1997
- 최명주외, 「WTO체제하의 지방중소기업지원정책」, 집문당, 1996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7
- 한국은행, 「최근의 중소기업 부도상황과 애로요인」, 1994
- 한표환외, 「지방화시대의 새마을금고 경영활성화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3
- 허재완 외, 「지방화시대의 산업지원제도 개편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8
- Bates, Timothy., "Small Business Appear to Benifit from State or Local Government's Economic Development Assistance", *Urban Affairs Reviews*, vol.31 no.2(1995), pp.206-225.
- Driessen, Patrick A., "A Qualification Concerning The Efficiency of Tax Expenditur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3, No. 1, 1987.
- Dyson, Kennrth,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Routledge:London, 1990.
- Giaoutzi M, Nijkamp P and D. J. Storey,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 Routledge, 1988
- Goodman, E. and Julia Barnford, *Small Firms and Industrial Districts in Italy*, Routledge: London, 1989

- Ettlinger, N., "An Assessment of the Small-firm Debate in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and Planning A*, vol. 29(1997), pp.419-442.
- Feldstein, Martin,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ax Expenditure: The Case of Charitable Giving", *The Economics of Taxation*, 1980.
- , "The Efficiency of Tax Expenditures Repl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3, No. 1, 1987.
- Harrison, Richard and Colin Mason, The regional impact of the Small Firms Loan Guarantee Scheme, In *Small Business Development*, Ken O'neill (ed), Avebury, pp.121-133.
- Haskins G. and Allan Gibb, "Support for Small Business Development in Europe", In *Small Business Development*, Ken O'neill (ed), Avebury, pp.45-68.
- Howard, Christopher, and Mary William, Testing the Tools Approach: Tax Expenditure versus Direct Expenditure, *PAR*, Vol. 55, No. 5, 1995.
- Jorgenson, D. W.,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1963, pp. 247-259.
- O'neill, Ken, Ranjit Bhambri, Terry Faulkner and Tom Cannon (ed), *Small Business Development*, Avebury : Vermont, 1987.
- Walker R, and David Greenstreet, "The Effect of Government Incentives and Assistance on Location and Job Growth in Manufacturing", *Regional Studies*, Vol.25, 1990.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실태조사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항구적 정착·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충남도의 요청으로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지원자금의 운용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귀사의 최고경영자 되시는 분이나 관련 부서의 책임있는 분께서 본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사의 의견은 지방중소기업들을 대표하고 정부와 충남도가 수립·집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관련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부디 진지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연구목적외의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정책연구실

☞ 제출기한 : 1998년 11월 30일
 ☞ 보내실 곳 : 440-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정책연구실
 ☞ 문의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정책연구실 (TEL : 0331-250-0943)
 충청남도청 기업지원과 (TEL : 042-220-3222)

※ 각 항목별로 정확한 사항을 기입하거나 √표를 해 주십시오.

A 귀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사의 창업연도는? (년)
2. 귀사의 기업형태는?
 ① 주식회사 ② 기타 법인 ③ 개인기업
3. 귀사가 속해 있는 업종은?
 ① 음식료품 ② 섬유·외류·가죽·신발 ③ 목재·가구
 ④ 종이·인쇄·출판 ⑤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⑥ 제1차금속·비금속광물
 ⑦ 조립금속·기계장비 ⑧ 전기전자·통신·정밀기기 ⑨ 기타()
4. 현재 귀사의 자산규모는?
 4-1. 자기자본 _____억 _____천만원(1997년 기준)
 4-2. 총자산 _____억 _____천만원(1997년 기준)
5. 귀사의 종업원수는? (명) (1997년말 기준)
6. 귀사의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한 지역는?
 (보기에서 골라 각각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6-1. 본사 ()
 6-2. 공장 ()

(11) 서울 (21) 부산 (22) 인천 (23) 대구 (24) 광주 (25) 대전
 (26) 울산 (31) 경기 (32) 강원 (33) 충북 (34) 충남 (35) 전북
 (36) 전남 (37) 경북 (38) 경남 (39) 제주

7. 귀사의 연간 매출액은? _____억 _____천만원(1997년 기준)

8. 귀사의 연간 연구개발비는? _____억 _____천만원(1997년 기준)

☞ 연구개발비는 손익계산서상의 시험연구·개발비, 대차대조표상의 시험연구비의 당해연도 상각액, 기타 기술개발 투바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중복되는 것은 제외

9. 귀사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9-1.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몇 건인지? (건)

10.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 ① 있다 ② 없다

10-1. 아래의 지원자금 종류중 귀사가 받으신 것은?

(여러 종류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 ② 협동화사업자금
 ③ 입지지원사업자금 ④ 정보화사업자금
 ⑤ 중소기업희생특례자금 ⑥ 이업종교류지원자금
 ⑦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⑧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
 ⑩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자금
 ⑪ 유통합리화사업자금 ⑫ 시·도경영안정자금
 ⑬ 기타 ()

D 다음은 귀사의 기업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기업주의 연령은? (세)

2. 기업주의 학력은?

- ① 중졸이하 ② 고졸이하 ③ 대졸이하 ④ 대학원졸 이상

3. 현 기업(공장) 소재지가 기업주의 출신지이거나 연고지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 기업주께서는 기업경영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하십니까?

- ① 현 기업경영에 풀 타임으로 전념 ② 다른 일과 병행하고 있음

5. 기업주께서는 현 기업의 설립 이전에 기업경영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C 다음은 귀사의 경영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입니다.

C-1 각 문항을 읽고 얼마나 동의하는지 아래 척도에서 골라 그 번호를 각 문항의 끝에 있는 ()안에 기입해 주십시오.

척 도		
1 = 매우 그렇다	2 = 그렇다	3 = 보통
4 =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지 않다	

- 1. 우리 회사의 제품 경쟁력이 외국제품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
- 2. 우리 회사는 IMF사태 이후 조업상태가 악화되었다.....()
- 3. 우리 회사의 금년도 매출전망은 매우 어둡다.....()
- 4. 우리 회사의 최근(1998년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 5. 우리 회사의 생존을 위해 감원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C-2 각 항목별로 √표를 해 주십시오.

1. 귀사의 정상조업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① 판매부진 및 재고누적 ② 원자재 가격상승 및 채산성 악화
- ③ 거래기업의 부도 ④ 고금리에 따른 대출금 부담
- ⑤ 대출애로로 운영자금 부족 ⑥ 원자재의 적기 물량확보 곤란

⑦ 기타 ()

2. 귀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판매부진과 재고누적 ② 금융기관 대출중단
- ③ 어음할인 곤란 ④ 거래기업 부도
- ⑤ 어음만기일 장기화 ⑥대출연장 불가
- ⑦ 기타 ()

3. 다음의 구조조정내용 중에서 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당되는 것을 3개까지 응답 가능)

- ① 원가 및 경비절감 ② 임금조정 ③ 인력조정
- ④ 투자축소 ⑤ 수출위주로 전환 ⑥ 신규사업 및 신제품개발
- ⑦ 설비자동화 ⑧ 저수익사업 정리 ⑨ 일부자산 처분
- ⑩ 영업활동 강화 ⑪ 기타()

4. 다음의 인력 및 임금조정내용 중 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당되는 것을 3개까지 응답 가능)

- ① 임금동결 및 삭감 ② 신규채용의 축소 및 중단
- ③ 임시직(일용계약직) 활용 ④ 근로시간 단축
- ⑤ 일정기간 무급휴가제 실시 ⑥ 인원재배치
- ⑦ 정리해고 ⑧ 기타 ()

5. 귀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가장 시급한 금융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기대출금 상환연장 ② 신용보증지원 확대
- ③ 운전자금지원 확대 ④ 시설자금지원 확대
- ⑤ 상업어음할인 확대 ⑥ 무역금융지원 지원
- ⑦ 어음보험지원 확대 ⑧부도어음 상환요구 자제
- ⑨ 기타()

D 다음은 정부의 자금지원시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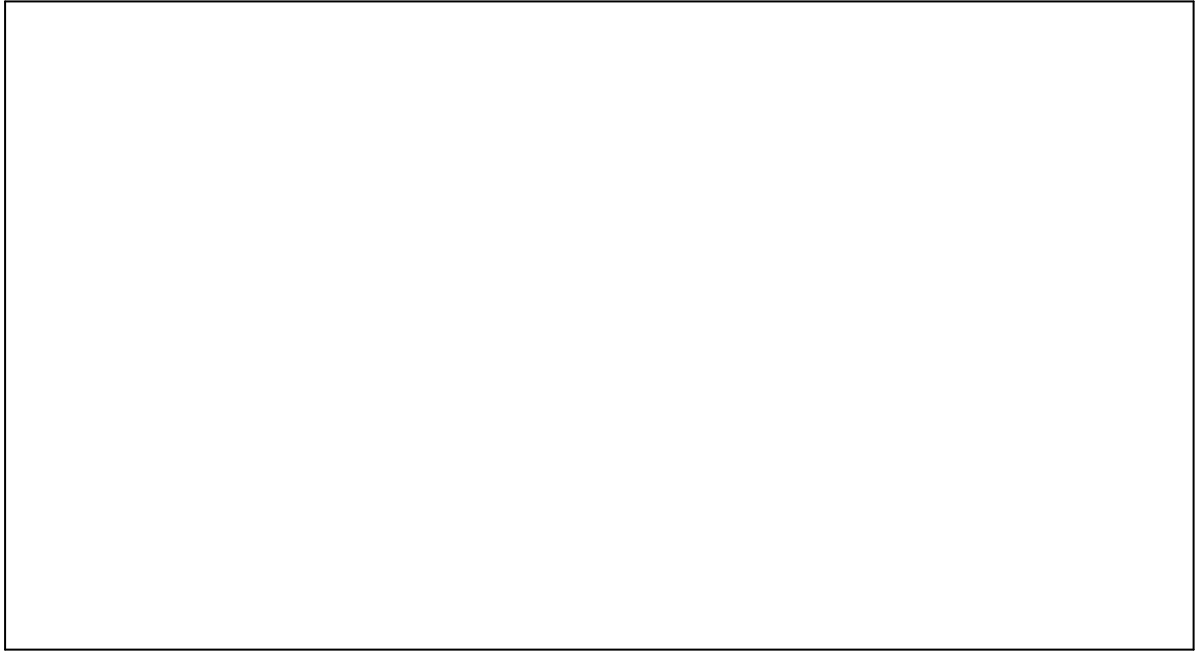
D-1 각 문항을 읽고 얼마나 동의하는지 아래 척도에서 골라 그 번호를 각 문항의

구분	자금지원(투자) 전 6개월	자금지원(투자) 후 6개월
생산(월평균)	백만원	백만원
생산능력(월평균)	백만원	백만원
매출(월평균)	백만원	백만원
수출(월평균)	백만원	백만원
부가가치(월평균)	백만원	백만원

3. 자금지원 전과 후의 경영개선효과를 비교해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자원지원(투자) 전 1년 평균	자금지원(투자) 후 1년 평균	비용절감액
고용인력	명	명	(연간 인건비 절약액) 억원
불량률	%	%	(연간 불량감소액) 억원

㉑ 그밖에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Abstract>

Enhancing the Government Financial Assistance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 Introduction

Small to medium-sized enterprises(SMEs) might be capable of sustaining local economies and even driving the national economy when large firms appeared relatively uncompetitive internationally. But the high failure rate among SMEs recently cast a shadow over the expectations that we have. In particular, at issue are the problems that SMEs face and must try to overcome lack of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limited ability to provide benefits and competitive wages to employee and so on.

Broad pattern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sistance to SMEs emphasize financial assistance most heavily. Bu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efforts to assist SMEs has not been evaluated empirically. This study presents empirically based approaches to evaluating the impact of governmental assistance upon SMEs. According to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s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enhancing the government financial assistance to SMEs.

II. Study Method and the Sample

The analysis presented in this report is based on the survey sampled the directors or accountants of 103 manufacturing companies in ChungNam county(DO). The questionnaire used in the survey focused on the following:

To reveal traits of SMEs that received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sistance,
To find out the extent which the recipients are satisfied with governments' financial assistance,

To investigate whether the productivity of SMEs had changed with financial

assistance.

III. Findings

Most of companies responded that the business conditions were aggravated because of the dullness of sales. And the companies are not likely to be satisfied with governments' financial assistance. Of the companies, 30% has received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sistance every year. But relatively the small firms have received the financial assistance less than medium-sized firms. This means the financial assistance is not equitable among firms.

The significant problems in providing loans to help SMEs were the requirements of mortgage, the complex process of loans, the deficiency of assisting finance and the irrational decision-making criteria.

Probabilistic regression equations are estimated to explain the determinants of the effect of governmental assistance. Based on the findings, assistance might be targeted to medium-sized firms, skill-intensive SMEs, highly productive SMEs and financially sound SMEs than others.

Empirical evidence says that governments' financial assistance had a significant effect upon production and management. Assisted companies responded that production and value-added have been increased more than 20% with governments' financial assistance. And they reported management improvements in labor force and quality control.

IV. Policy Recommendations

The results reflect closely the overall themes in past research. And these results reveal the problems in governments' financial assistance. They include:

- The problems of scale of assistance fund
- The problems of evaluation criteria for assistance
- The problems of complexity of assistance process
- The problems of mortgage-based loan

Based on the results, we recommend the following:

- To be effective, provision of support for SMEs has to be very much available at the local level. Therefore the scale of assistance fund has to be increased by the decentralization of fund management and the mobilization of regional/local capital.

- When a state or local government seeks to assist the SMEs, it is most effective that the assistance is channeled to growing, entrepreneurial firms. Therefore the evaluation criteria to select the favored recipient firms might be rationalized, and focused on the intensity of skill, the soundness of finance and the entrepreneurship.

- It is the timing of governments' assistance that have significantly effected the companies' investments. Therefore the assistance process might be clear and minimized.

- Finally, the loan guarantee scheme might be developed to improve the security-based loan. As a cost-effective means of increasing bank lending to SMEs, any loan guarantee scheme should be operated by Regional Credit Corporations, with a limited public subsidy.